

2024

학생생활교육

길라잡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민 주 시 민 교 육 과 】

【 목 차 】

I. 학생생활지도 개요

1-1. 정의 및 법적 근거	01
1-2. 학생생활지도 범위	03
1-3. 학생생활지도 방식	08
1-4.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27

II. 학생생활교육위원회

2-1. 구성 및 운영	28
2-2. 사안 처리 절차 및 세부내용	29
2-3 불복절차 통지 및 안내	40
2-4.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 시나리오	46
2-5. 관련서식	51

III. 학생생활규정

3-1. 제 · 개정의 원칙	66
3-2.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68
3-3. 절차 및 방법	69
3-4. 학생생활규정 제 · 개정 Q&A	74
3-5.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77
3-6. 학생생활규정 관련 법령	86
3-7. 관련서식	105

I. 학생생활지도 개요

1-1 정의 및 법적 근거

1-1-1 학생생활지도 정의

▣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로서, 법령의 근거가 있는 합법적인 지도 행위임

▣ 법령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 (주체) 학교의 장과 교원
- (시기) 교육활동 과정 중으로서 고시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활동을 하는 동안을 의미함.
- (지도범위)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고시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그 지도범위를 정하고 있음
- (방법) 학생생활지도는 징벌이 아닌 “지도 행위”임을 분명히 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의한 생활지도 방법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이며, 이에 따른 구체적 지도방식을 고시 제3장에서 정하고 있음



▣ 학생생활지도 절차



1-1-2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법적 근거



1-2 학생생활지도 범위

1-2-1 학업 및 진로

-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와, 학생이 학업에 전념하는 데 지장을 주어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에 대해 생활지도가 가능함
- 학생의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생활지도가 가능함

■ 수업 중 생활지도 가능 행위

-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요구
- 정당한 과제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수업에 늦게 들어오거나 무단으로 이동하는 행위
- 수업 중 엎드리거나 잠을 자는 행위
- 해당 수업과 관련 없는 타 교과 공부 또는 개인과제를 하는 행위
- 수업 중 교사에 대한 폭언 및 위협적 행위
- 교원에 대한 모욕 행위
- 수업 중 부적절한 행동으로 주의를 분산시켜 원활한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 학습을 위한 모듈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 등

■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 금지 물품

- 도박 물품(포커 카드, 마작, 화투 등)
-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도구 또는 장치
- 휴대용 게임기
- 선정적 사진이나 영상물 등



■ [관련 판례]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 교원의 수업권은 교육권의 포괄적 개념 가운데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권리 (헌법재판소 2001.11.29. 2000헌마 278 결정)로 피교육자의 교육받을 권리(학습권)의 보장에 필수적인 것으로 법적으로 보장되는 교육상의 직무권한임

※ 교원의 수업권은 교육기본법 등의 법령의 범위와 교사의 전문성을 토대로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임

- 대법원 2005다25298 판결 -

-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수업시간 외에 학교관리자 및 담임교사, 교과담임교사 등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진로관련 활동*은 생활지도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음

* 상급학교 진학 등과 관련한 진로심리검사, 진로탐색, 진로체험, 진로설계 등

■ Q&A

Q 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진로 및 진학 관련 생활지도가 가능한가요?

A 교원은 학생이 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시에 따라 학생의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하여 생활지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은 자신의 개인적 신념, 가치 등이 학생생활지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학생에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Q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행위에 대해 생활지도가 가능한가요?

A 학생이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것은, 비록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도 가능합니다.

1-2-2 보건 및 안전

- 보건 및 안전과 관련된 생활지도의 범위는 **학생과 교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며, 각종 안전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사항들이 포함됨
- 학교 안팎에서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수 있는 행동** 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음
- 학생 자신 또는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행위**를 포함한 사항에 대해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음

▣ 보건 및 안전 관련 생활지도 행위

- 식습관 등 급식지도
-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지도
- 사이버 중독·감염병 예방 지도
- 도박 및 사행성 게임을 하는 행위
- 공격성 및 공격적 행동
-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반사회적 행위
- 가출, 기타 아동·청소년으로서 부적절한 행동
- 통학방법, 학교 내 통행 예절 지도
- 위험한 장난감 및 흉기 소지 행위
- 용도를 벗어난 시설물이나 장치의 이용 행위 등

- 교육활동 중 학생의 일상생활에서 학생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보건과 안전에 위협·위해가 예견되는 학생 행동 전반에 대하여 생활지도 가능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에게 안전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함



1-2-3 인성 및 대인관계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음
-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학생들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사이버 공간 포함) 등 의사소통 행위에 대해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음
 - 비록, 교육활동 중이 아닌 시간(하교 시각 이후)에 발생한 학생들 간의 부적절한 의사소통은 교사가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경우 교육활동 중에 생활지도가 가능함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을 위한 생활지도 가능
- 단위 학교가 추구하는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교복 착용 등 복장에 관한 사항과 바람직한 용모** 등을 지도할 수 있음
- **학생의 비행 및 범죄**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생활을 저해하고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 반사회적 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예방을 위한 지도를 할 수 있음

▣ 인성 및 대인관계를 위한 생활지도 행위

- 학생 간의 욕설 및 비방 행동
 - 특정 학생을 대화에서 소외시키고 따돌리는 행위
 - 교직원에 대한 반말, 욕설 등의 행위
 - 기타 상대방이 모욕감,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의사소통 행위
 - 학교가 정한 교복을 미착용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착용한 행위
 - 특정 종교·인종·집단에 대한 혐오를 과도하게 표현하는 복장을 착용하지 않도록 지도
 - 과도한 노출 등 학교가 추구하는 문화에 부적합한 복장 착용을 하지 않도록 지도 등
-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다문화가족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활동이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음

▣ 「장애인복지법」·「다문화가족법」

- ▶ 「장애인복지법」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다문화가족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⑤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Q&A

㉔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만으로 학생의 인성 및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사항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㉕ 학생의 인성 및 대인관계 문제로 발생한 절도, 도박, 폭력행위와 같은 범법 행위,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품행장애 등 정신병리적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 연계하고, 정신병리적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㉖ 학생 간의 갈등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㉗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간의 갈등 상황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학교폭력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을 위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학생 간의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신고·접수된 이후에는 반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경미한 경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 ▶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1-3 학생생활지도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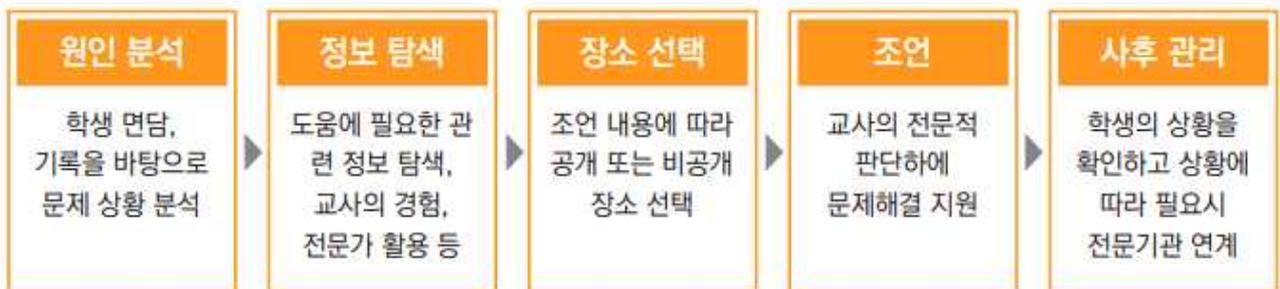
1-3-1 조언

-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함
- 학생과 보호자에게 문제 상황을 설명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음
- **자세하게 조언**하되 실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 좋음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생활과 관련된 조언의 내용은 상호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조언 시 과정 중에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징후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대응해야 함

▣ 조언 상황 예시

-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습·진학 등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 교사가 학생 면담 또는 관찰 시 교우관계·학습 등에 대한 어려움을 발견한 경우
-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정서행동검사 결과 학생에게 심리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 학생의 건강한 신체적 발달, 문제행동 개선 등을 위해 학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부터 검사·상담·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학생 또는 보호자가 가정 환경 및 취업 등에 대하여 교원에게 정보 제공, 해결방안 제시 등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 해결책을 제시했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적·반복적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등

▣ 조언의 절차



■ Q&A

④ ‘성장을 이끌어내는 건설적인 조언’이란 무엇인가요?

Ⓐ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그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이 담긴 조언을 의미합니다. 학생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표현이 아닌, 학생의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담겨야 올바른 조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④ ‘조언’에 해당하는 특정 요건이 있나요?

Ⓐ 조언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로 언제나 조언할 수 있습니다. 조언은 학생생활지도 중 많이 활용되는 방식으로 특정 요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 교육활동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가장 광범위한 생활지도 방식입니다. 다만, 공개적인 조언을 하는 경우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평가나 비난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3-2 상담

- 학생생활지도 방식으로서의 상담*은 학생의 학습 및 학교생활에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소통의 과정**을 의미함
- * 진로 체험의 날, 진학 설명회, 학부모 상담 주간 등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의 행사 및 일정에 의해 진행되는 상담은 포함하지 않음
- 학생에게 교사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학생이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탐색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담 중 대화 내용이 주변 사람에게 들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상담 내용이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함
- ※ 단, 상담 중 아동학대, 성폭행, 학교폭력 등의 사실이 의심되거나 발견된 경우 관련 법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함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상담하는 경우 필요시 보호자의 참여도 고려할 수 있음
- 보호자와의 상담인 경우에는 상담 시작 전에 핵심 주제, 기대 목표, 상담 시간 등을 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음

■ 상담의 요건

- 학교의 장 또는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상호 간에 학습, 교우관계, 진로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상담의 목적, 주제, 방식(유선, 대면, 서면 등), 일시*, 장소 등에 대하여 상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 학부모 상담은 수업 시간 외, 근무 시간 내의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임
- ※ 유선으로 상담을 진행할 경우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전화 ‘착신전환’ 설정 확인 필요

■ 상담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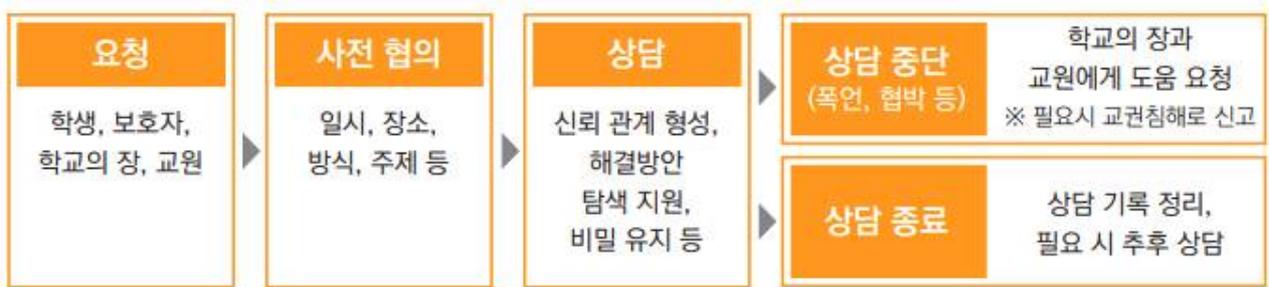
- 학생이 긴급한 사유 없이 수업 시간 중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사전연락 없이 보호자가 학교로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보호자 개인의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보호자가 직장 업무 처리 등을 사유로 야간 또는 주말에 SNS 등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보호자가 폭언 또는 민원 등을 활용하여 상담을 강요하는 경우
-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인 경우
- 교원이 위협을 느끼는 도구, 흉기 등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 교원에게 폭언, 욕설, 헐박 등을 하는 경우
- 교원 등에게 물리력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 교원의 직무 의무가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 교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질의·요구하는 경우

■ 상담 장소

- 상담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신뢰 관계 형성 및 상담내용 비밀보장 등을 위해 별도로 구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도 함께 갖추는 것이 필요함
- 긴급 지원 요청을 위한 비상벨 시스템 및 전화기, 상담 시간 확인을 위한 알람 시계, 녹음* 장비 등 상담 시 교원의 안전 등을 위한 시설 등 구비 필요(학교의 장은 관련 예산을 적극 편성하여 지원)

* 녹음이 필요할 경우 사전 고지 상담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경우 사용

■ 상담 절차



■ Q&A

Q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은 무엇인가요?

A 상담 관련 직무 범위는 수업 및 학생 지도와 관련된 영역 등이 해당됩니다.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은 교사가 관여하지 않는 학생이나 학급 또는 본인이 담당하지 않는 행정업무와 관련된 요구 등이 있습니다.

Q 상담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하나요?

A 공식 요청에 의한 상담인 경우에는 기록을 남기는 것을 권장합니다. 학생의 발달 과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근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과의 가벼운 상담인 경우에는 개인 메모 형태로 핵심만 기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상담을 녹음 및 녹화하려는 경우에 허용해야 하나요?

A 사전에 녹음 및 녹화가 허용된 장소 및 공지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녹음 및 녹화는 상담에 참여한 사람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동의하지 않은 녹음 및 녹화가 진행됨을 인지한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안전을 위해 상담실 등에 설치된 CCTV 등을 통한 영상 녹화는 가능합니다.



1-3-3 주의

-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이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자신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 등에서 학생에게 **지적과 경고**를 할 수 있음
- 주의는 학생의 **문제행동이 발생한 즉시 시행**하되, 문제행동의 정도와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의는 **간결하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여** 학생이 주의를 받는 목적과 이유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주의를 줄 경우 **경멸, 비난, 조롱, 타인과의 비교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주의의 요건

- 자신과 타인의 정서·신체적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을 알리거나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관련 판례] 교육적 목적을 위한 주의

- 학생이 수업 중 교사의 사전 허락 없이 녹음기, 전자기기, 화장품 등 수업과 관련 없는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거나, 과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학생이 봉사 시간(청소 시간 등)에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학생이 지나친 장난을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 교실, 급식실, 특별실 등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위반하려고 하는 경우
- 학생이 욕설과 비속어 모욕적인 말 등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 학생이 신체적인 폭력을 사용하려 하는 경우 등

■ [관련 판례] 교육적 목적을 위한 주의

- ▶ 동아리 도우미(학부모)가 학교 합창부 연습실에서 아동이 자리를 몰라 어디에 앉아야 할지 물어보자 다른 아이들과 달리 아동에게만 “빨리 앉아” 라고 소리치며 위협적으로 말하여 정서적 학대
- ⇒ (**학대 불인정**) 합창부 담당교사의 요청에 따라 학부모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합창부원들을 조용히 시키거나 연습에 집중하도록 할 목적이 확인되어 학대 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광주고법 2021노1162 -

■ [관련 판례] 공개적인 장소 및 주의 반복

▶ 교사가 아동 A(7세)가 작성한 일기를 검사하던 중 자신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동의 일기를 다른 급우들이 듣도록 크게 읽은 후 아동에게 “내가 읽었다고 말 공격해? 애들아 선생님이 말 공격했니? 혼내야 돼? 안 혼내야 돼?” 라고 말하고, 아동 B(7세)가 반 친구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면 반 친구들로 하여금 아동에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는 속담을 여러 번 반복하여 말하도록 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

⇒ **(학대 인정)** 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피해 아동들 4명) 등 고려

- 서울중앙지법 2022고단3627 -



1-3-4 훈육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조언, 주의 등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긍정적 행동 변화가 없을 경우 학생에게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을 할 수 있음
- 수업 방해 등 문제 학생 행동을 훈육하기 위하여 법령과 학칙 내에서 적절한 교육 방법을 선택할 권한이 있음
- ※ 학교·학급의 학칙과 교육환경, 학생의 유형·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생활지도 방법의 적절성 판단
- 학생들을 훈육할 경우 **학생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폭언 및 체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관련 판례] 교원의 생활지도 방법 선택

▶ “학급 담당교사는 수업 방해 등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의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교사가 장애학생에 대하여 시행한 교육 방법이 위와 같은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 학교 및 학급의 교육환경, 학생의 장애의 유형 및 정도, 채택한 교육 방법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 등에 비추어 그 교육방법이 당해 학생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에 해당되거나** 장애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등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단지 특수교육 이론상 최선의 방법이라거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2다95134 -

1 지시

- 지시는 학생의 긍정적 행동을 증가시키고 부정적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적 조치를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
- 과제를 부여하는 지시를 할 경우 학생의 수준에서 수행이 가능한 과제를 부여하여야 하고, 과제 수행 완료 이후 그에 따른 교육적 지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지시로 인한 과제 수행시에도 식사, 화장실 이용 등 기본적인 쉬는 시간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시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 안전사고 예방, 건강 등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지시 상황 예시

- 교육활동 중 친구와의 지나친 잡담·장난을 중단하도록 지시
- 수업 시간에 늦어 일과 시간을 준수하도록 지시
- 등·하교시 안전한 이동 수단을 활용하여 통학하도록 지시
- 수업 시간에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시
-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 사용을 중지하도록 지시
-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해당 놀이를 금지시키거나 적당한 장소로 이동을 지시

- 수업과 관련이 없는 질문이나 정당한 질문에 대한 말대꾸, 비아냥 등 중지 지시
- 과제를 요구한 기간 또한 시간 내에 작성하지 못한 경우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등을 활용하여 해당 과제를 완료하도록 지시 등

■ [관련 판례] 학생의 건강을 위한 정당한 지시

▶ 교사가 월요일마다 아동들에 대하여 소변검사 키트에 의한 소변검사를 받게 해 정서적 학대 ⇒ (학대 불인정) 지속적으로 흡연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교사가 아동들의 흡연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흡연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를 하기 위하여 소변검사를 실시하였던 점, 소변검사는 소변 중 코티닌량을 측정함으로써 흡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고 소변검사 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이는 점, 소변검사가 통상적인 건강검진과 같이 아동들이 직접 소변을 종이컵에 받아 이를 교사에게 제출하면 교사가 키트를 이용해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점, 소변검사로 아동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은 사실이나 소변검사를 통한 흡연여부 확인과 그에 따른 지도로 청소년의 흡연 확산 방지 및 건강 보건 증진의 목적 달성 기대됨

-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7노406 -

■ Q&A

Q 정당한 지시와 부당한 지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형식적으로는 학생생활규정 등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교사의 말을 잘 듣는 학생을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시가 학생의 지적·정의적·행동적 능력을 함양하여 전인적인 인간으로 발달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학교급별, 학생별 지시는 어떻게 달라야 하나요?

A 학교급별, 학생별로 성장 발달 단계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 대한 최고 전문가는 현장 교사입니다. 개별 교사별로 기준을 잡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학년 교사 협의회 또는 전체 교사 협의회를 통해 학년 규정, 학교 규정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Q 제12조제2항의 ‘특정한 과업이나 특정한 행위 지시’란 무엇인가요?

A 지시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 안전사고 예방, 건강 등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교육적 조치를 말합니다. 과제를 부여하는 경우 학생의 수준에서 수행이 가능한 과제를 부여하여야 하고, 과제 수행 완료 이후 그에 따른 교육적 지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학급 전체 학생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경우 학급 내 환경 정리 등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 특정 행위에 대해 벌을 주기 위한 ‘별청소(지각한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를 시키는 것, 과제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것 등)’는 해당되지 않음



2 제지

- 학생이 법령과 학칙에 위반되는 문제행동을 하거나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상황에서 구두 제지 및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음
 - ※ 물리적 제지는 길을 가로막는 행위처럼 소극적 수준의 행위, 학생의 신체 일부를 붙잡는 행위와 같이 적극적인 행위가 포함되며, 대표적으로 자해, 학교폭력, 안전사고, 교육활동 침해,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 등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 보호를 위해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를 실시 할 수 있음
- 교육활동 중 구두 제지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별도의 학교장 보고, 보호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는 없음
- 교육활동 중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즉시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 ‘물리적 제지’와 ‘체벌’은 엄연히 다른 것으로, 체벌은 여전히 엄격히 금지됨. 물리적 제지는 긴급한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의 위해를 감소하기 위함이므로, 과거 훈육을 위해 일상적인 상황에서 실시되었던 체벌과 무관함
- 구두 제지를 할 경우 감정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 구두 제지 시에는 문제 행동에 대해서만 짧고 명료하게 실시하여야 함
- ※ 제지 시 호루라기, 전자 호루라기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제지할 수 있음
- 물리적 제지를 하기 전에 먼저 주위 다른 학생을 정확히 지정하여 교장, 교감, 주변 교실의 교사들을 불러오도록 지시할 수 있음
- 물리적으로 신체를 제지할 경우에는 학생의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하되,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사용하여야 함
- 위급한 상황 시 교사는 주위 학생이나 교사에게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 또는 녹음을 하도록 하여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 녹화, 녹음한 자료가 다른 곳에 유포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제지 요건

-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 * 긴급한 상황은 대상 학생이 피해를 끼친 정도나 끼칠 가능성, 흉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 여부, 기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있는 교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관련 판례] 정당한 물리적 제지

▶ 교사가 아동이 같은 학급 여자아이들과 싸워 혼계하던 중임에도 본인 자리로 돌아가자 쫓아가 아동의 왼쪽 팔뚝 부위를 세게 잡아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찰과상 등을 가해 신체적 학대

⇒ (학대 불인정) 교사는 아동들을 학교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인 질서와 규칙을 훈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고, 다른 아동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 말로 제어가 되지 않는 아동의 양팔을 잡고 그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학대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대전지법 2021고정992 -

■ 제지 상황 예시

- 복도 및 계단 난간 등 위험한 장소에 올라가거나 뛰는 경우
- 도구 등을 활용하여 자해를 하는 경우
- 공구(실습실), 화학물품(과학실 등),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휘두르는 경우
- 인화성 물질과 화기를 이용한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 마약성 물질 등 위험한 물질을 흡입하는 경우
- 타인에게 정서적·신체적 폭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가하는 경우 등

■ Q&A

Q 학생을 훈육할 때 반드시 조언, 상담, 주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친 후 제지를 실시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인 교육활동 상황에서는 조언이나 상담 또는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훈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훈육 전에 실시하는 조언이나 상담, 주의를 사전에 이루어지면 충분한 것으로 반드시 당일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금지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는 구두 제지를 할 수 있고,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

Q 물리적 제지가 발생된 이후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야 하나요?

A 학교의 장은 학교의 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유선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아울러, 학교의 장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물리적 제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지원인력(교직원, 외부기관 등 활용) 지정 및 대응 절차 등을 마련하여 안내하여야 합니다.

※ 안내사항 : 물리적 제지가 발생한 일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 등

※ 구두 제지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별도의 학교장 보고 및 보호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3 분리

- 분리는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함
- 학생이 수업 중 잡담, 장난, 고성, 수업 거부, 기타 돌발행동 등으로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거부하거나 타인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 고의적으로 교실 밖으로 분리조치 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 장소 선정 시 학생들의 선호 장소는 가급적 제외하는 것이 좋으며, 분리 공간의 환경과 안전(시설, 위험 도구 등) 등을 확인해야 함
- 훈육으로서의 분리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지도 방법으로 징계로 인한 분리, 출석정지 등과는 다름
-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교실 밖 일시적 분리조치를 위한 별도 공간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음
- ※ (별도 공간 예시) 교무실 · 생활지도실 · 학년실 등의 실내에 별도 자리를 마련하거나, 학교 내 유휴 교실이나 학생 수업 시간 중 활용되지 않는 학부모 상담실 등의 겸용 가능한 특별실 등

▣ 학생 분리 지도 공간 안전 확인 사항

- 교실 바닥 및 벽체 부착물의 안전상태
- 출입문 레일 및 손 끼임 방지 시설
- 창호 안전상태(유리, 추락방지 보호시설 등)
- 칠판, 사물함, 책걸상 상태
- 안전수칙 및 대응 요령 게시 상태
- 위험한 물품, 교구 등의 유무
- 지도인력의 학생 안전 지도 관리 여부 등
- 학생이 분리 중에 지켜야 할 행동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행동 수칙(과제 등)을 분리 장소에 게시하여 학생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관련 판례] 학생 분리 환경 고려 및 방임

- ▶ 피해 아동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당일 온도가 최고 33.8도에 이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시 25분경 피해 아동을 복도로 내보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12시경까지 교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
- ⇒ **(학대 인정)**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한 것으로 보고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와 경합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함

-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137 -

■ [관련 판례] 분리 시간 및 조건의 적절성

▶ 교사가 피해 아동을 ‘킵타’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고 약 40분간 책상에 혼자 엎드려 있게 해 정서적 학대

⇒ **(학대 불인정)**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적절하고도 근본적인 훈육 방식을 강구하지 않은 채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넘어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0고정520 -

▶ 교사가 수업 시간 중에 피해 아동들을 복도로 내쫓은 후 교실 문을 닫아 다른 학생들과 차단시키고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하여 정서적 학대

⇒ **(학대 불인정)** 피해 아동들이 복도에 서 있었던 시간이 길지 않고, 그 사이 교실에서는 자습이 이루어졌을 뿐 교사가 적극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 아동들이 복도에 서 있는 것 외 다른 신체적 또는 정서적 부담이 있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아니었음

-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9고단1707 -

■ [관련 판례] 사전 안내 후 분리 필요

▶ 교사가 피해 아동을 혼내는 과정에서 교실 밖 복도로 피해 아동을 쫓아내고 명심보감을 쓰는 벌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

⇒ **(학대 불인정)** 피해 아동만 쫓아내거나 명심보감을 쓰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아동들에게도 행해진 행위로 차별적 행위라 보기 어렵고, 아동의 행위를 지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감정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학대라 보기에 무리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5고단2572 -

▶ 교사가 아동이 손을 들지 않고 발표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에게 '너 감금이야'라고 말하면서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

⇒ **(학대 불인정)** '수업 전에 떠들거나 수업 중에 잘못을 하면 교실에 남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겠다' 고 미리 말한 다음 아동들을 30분~1시간 30분간 교실에 남게 하였고, 교실 안에서 이 행동을 크게 제약하지 않은 점, 다른 아동들 진술에 따르면 교실 안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 고려

-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9고단554 -



■ Q&A

Q 교실 내 지정된 위치에 이미 다른 학생이 있는 경우 추가로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교원의 판단에 따라 기존의 지정된 위치 외에 다른 위치를 지정하여 분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수업중 교실 내 분리 관련 인권위 권고

▶ 통상적인 앞자리 배치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에도, 집중을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을 7일 동안 통상적인 자리가 아닌 교탁 옆에 홀로 배치**한 것은 다른 학생들과 구분 짓게 한 것으로, 학생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정서적 체벌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학생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 국가인권위원회 2020. 6. 30. 19진정0807000 결정 -

Q 학생이 교실 내 분리를 거부하거나 교실 내 분리를 했음에도 문제 행동을 반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그런 경우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또는 정규수업 이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학생생활규정에 의한 징계도 가능)

Q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별도 장소에 분리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바로 인계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또는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3회차)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㉔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며, 만약 분리 조치한 학생에 대한 보호자 인계가 필요하여 요청하였으나 학부모가 이를 거부할 시에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요?

㉕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은 일과 중 매 교시별 수업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 모든 수업이 종료한 일과 후의 시간을 의미하며, ‘특정 장소로의 분리’는 교무실, 특별활동실 등 분리 조치를 위해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 별도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만약 학부모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였으나 반복적으로 학부모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4호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에 근거하여 보호자가 정당한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㉖ 학생 분리 지도 시, 분리 장소 및 인계·담당 주체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에서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㉗ 학생 분리 지도를 위한 절차 및 장소, 인계 또는 담당 주체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고시 제12조(훈육)제6항에 따른 ‘학생 분리’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지침」 제8조(출결 상황)에 해당되지 않으며, 학교에서 별도의 ‘분리학생 조치 현황 대장’ 등을 통해 분리 학생의 학습 장소를 기록·관리 하여야 함

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한 상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㉙ 학교의 장은 학교 상황을 고려한 교실 밖 분리 학생 지도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계획에 명시된 업무 분장 등에 따라 안전사고 관리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물품 조사 및 분리보관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음
-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 학교의 장과 교원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학생의 물품을 조사하고 분리 보관하는 과정에서 물품 손상 및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잠금 장치가 부착 되어있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학생의 물품을 조사할 때 신체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학생과 동성인 교직원의 도움을 받아 조사할 수 있음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을 제정할 때 금지된 물건과 이후 절차 등의 내용을 자세하게 명시하고 물품 조사 및 분리 보관시 그 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함
- 생활지도를 위해 학생 물품을 조사할 때에는 불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없음
- 학생의 물품을 조사할 때, 물품 조사 과정에서 학생 개인 신상 정보를 침범하거나 개인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물품 조사 상황 예시

- 담배,ライター, 술, 화학약품, 레이저포인터, 인화성 물질, 흉기 등의 물품 소지 신고가 들어왔거나 목격한 경우
- 학교폭력, 비행(도박, 오토바이, 절도,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등에 사용될 수 있거나 사용한 물품에 대한 소지 신고가 들어왔거나 목격한 경우
- 자해 또는 자살 등의 가능성이 있는 물품 소지 신고가 들어왔거나 목격한 경우
- 약물 오남용 등의 가능성이 있거나 목격한 경우
- 그 외 학칙에서 금지한 물품 소지 신고가 들어왔거나 목격한 경우 등

■ Q&A

Q 2교시 쉬는 시간에 약 다섯명의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나온 뒤 흡연 정황이 신고되었습니다.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품 조사를 할 수 있나요?

A 흡연 정황이 의심되는 객관적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물품 조사가 가능합니다.

㉑ 확인된 물건 중 폭발물, 마약류 등 현행법상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라면 학교가 보관을 해야 하나요?

㉒ 현행법상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으로 분류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총포화약법 제23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㉑ 물품 분리보관, 학생 분리지도 등을 위한 대장의 관리 주체는 누구인가요?

㉒ 생활지도에 따른 각종 대장 등 문서의 총괄 관리 주체는 학교의 장입니다. 다만, 각 문서의 실무적인 관리 주체는 학교에서 정한 업무분장 및 위임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㉑ 가위, 칼과 같은 학용품을 위협하게 사용하는 경우 학用品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나요?

㉒ 학생이 가위, 칼과 같은 학用品을 위협하게 사용하는 경우 교원은 고시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고시 제12조제9항1호에 따라 분리보관 할 수 있습니다.

▣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제12조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 예시)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흥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하고, 분리 물품에 대해 학부모에게 안내하며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위 예시는 학교급별 단위학교 여건에 맞게 교직원 협의 등을 거쳐 수정하여 사용 가능함.



■ 학생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제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의 분리)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장실, 교무실 등 학교의 장이 지정한 교내 별도의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가 학교의 장에게 학생 인계 요청 학교의 장 책임하에 관리자가 지정 장소로 이동 및 지도 단, 관리자 부재 시 교직원이 협력하여 학생 분리 및 지도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자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장실, 교무실 등 학교의 장이 지정한 교내 별도의 장소 (60분 이내)	학교의 장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각은 수업 시작 후 ○○분으로 함(학교 여건에 따라 정함) - 분리 시간은 수업 종료 시까지(단, 학생이 수업 종료 전이라도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된 경우 학급으로 복귀 가능 등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적으로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 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 장소 선정 시 학생들의 선호 장소는 가급적 제외, 분리 공간의 환경과 안전(시설, 위험도구 등) 등을 확인 - 학칙으로 적절한 분리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실시하고 필요 이상의 지나친 분리는 자제 - 분리가 실시되는 동안 학생만 특정 공간에 방치하지 않아야 함 				

※ 위 예시는 학교급별 단위학교 여건에 맞게 교직원 협의 등을 거쳐 수정하여 사용 가능함.

1-3-5 훈계

- 훈계는 학생의 잘못된 의지와 태도를 바로잡아 스스로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판단하며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 의식을 함께 가지도록 지도하는 것임
- 훈계는 학생의 잘못에 대한 ‘응징’ 또는 ‘처벌’ 이 목적이 아니라, 잘못을 수정해주거나 바람직한 행동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중요함
- 감정의 기복에 따라 훈계하거나 일회적인 훈계보다는 학생의 잘못이 수정될 때까지 장기적인 훈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 훈계 시 수치심 주기, 경고와 위협, 회유, 비교, 비난, 평가와 판단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훈계의 과제 부여(대안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는 교원이 현장에서 학생과 함께하며 지도해야 하며, 교사가 학생의 교육적 지도를 위해 필요에 따라 선택 또는 병행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단 특정 행위에 대해 벌을 주기 위한 ‘벌청소(지각한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를 시키는 것, 과제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것 등)’ 는 해당되지 않음

■ 훈계의 예시 상황

- 수업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에게 수업 시작 전 교과서 등을 미리 준비해 착석하여 기다리도록 해야 할 경우
- 자신의 잘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기분 등에 대하여 글로 작성해보도록 해야 할 경우
- 친구의 우유를 쏟은 학생에게 청소도구를 활용하여 닦도록 해야 할 경우

■ Q&A

Q 교무실, 화장실이 아닌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교실을 학급 규칙으로 정하여 벌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훈계에 포함되나요?

A 징벌 목적의 벌청소는 훈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행동과 직접 관련(예: 친구의 음료수를 바닥에 엷지른 경우, 벽에 낙서를 한 경우 등)되어 청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훈계 조치로서 청소와 같은 과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급 규칙에 따라 학급 전체 학생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학급 내 환경 정리 등의 청소 지시(제12조제2항)는 가능합니다.

Q 반성문을 쓰도록 하는 것은 인권위 권고를 위반하는 사항인데, 훈계 시 학생들에게 성찰하는 글을 쓰도록 할 수 있나요? [해설서 P.81]

A 학생에게 강제로 잘못을 시인하게 하는 반성문과는 달리 성찰하는 글쓰기는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기분을 돌아보기 위한 시간과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성찰하는 글을 쓰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반성문과 성찰문 차이) 반성문은 어떤 행위에 대한 외부적 판단에 근거하여 학생에게 그 판단을 인정하고 맞추도록 하는 성격이 강한 반면, 성찰문은 학생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생각하여 돌아보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개선점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1-3-6 보상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모범적인 행동과 바른 인성 함양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음
- 생활지도에 대한 보상은 학력 수준 또는 수상 실적과 관련 없이 바람직한 행동과 인성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어야 함
- 보상으로 인해 학생 간 지나친 경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여야 함
- 학생들을 자극할 수 있는 지나친 고가의 물품, 상품권, 기타 학생에게 부적합한 물품은 보상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음

■ 보상의 예시 상황

- 수업 시간 등 교육활동 중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태도를 보여준 학생
- 교원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바탕으로 교직원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인 학생
- 학교 외부에서 바람직한 행동과 인성으로 학교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학생
-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바른 인성을 함양하거나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학생
-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완료하거나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제시 등 창의성을 발휘한 학생
- 노력을 기울여 이전에 부족한 점을 개선했거나 발전한 학생 등

1-4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휴대전화는 개인 통신용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도 포함됨
 -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음성·영상·문자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 정보 검색·열람 또는 생성·저장하는 행위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 ※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를 활용한 음성 또는 영상 통화, 메시지 주고받기, 음성 녹음, 영상 촬영, 메시지 검색·열람 등을 포함함
 -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교육 목적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휴대전화 사용이 부득이한 것인지를 적시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허가받는 절차를 거쳐야 함
 - ※ 한국어가 미숙한 중도입국 청소년이나,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 등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역, 음성의 문자 변환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교육 목적 사용으로 인정함
 - 교원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도 휴대전화 사용을 구두로 일시 허가할 수 있음
- 학교의 장과 교원은 부득이하게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사용 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학생 및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허가에 필요한 절차, 신청서 및 구비 증빙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관련 판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20.4.7.)

▶ 따라서 수업의 평온성 유지 등 학교 생활질서 확보 차원에서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점심시간 또는 휴식시간 등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그 제한이 과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12다95134 -



II. 학생생활교육위원회

2-1 구성 및 운영

2-1-1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이해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개념

- 학교 규칙에 근거하여 학생징계(선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기능을 갖는 학교 내 자치기구
- 「초·중등교육법」상의 징계와 관련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 단, 법령에는 징계 절차나 기준, 사안조사 방법 등 구체적 사항까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는 구체적인 징계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학교 규칙 내 학생생활규정으로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

● 근거(초중등교육법 제18조)

○ 제18조(학생의 징계)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근거(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2023.9.27.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2023.9.27. 신설>

- 운영 목적: 민주적이고 인권이 존중받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학교 규칙 위반 학생에게 자발적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을 선도·교육하고 바람직한 교육적 대안을 제시
- 운영 방침: 학생에 대한 징계는 인격이 존중되는 적법한 절차와 교육적 방법을 통해 실시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학생에 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해 단위 학교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교감(교감 미배치: 교무부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인사, 생활교육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별도 위촉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생활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 모든 사항과 그 외의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단위 학교별 학교 규칙을 통해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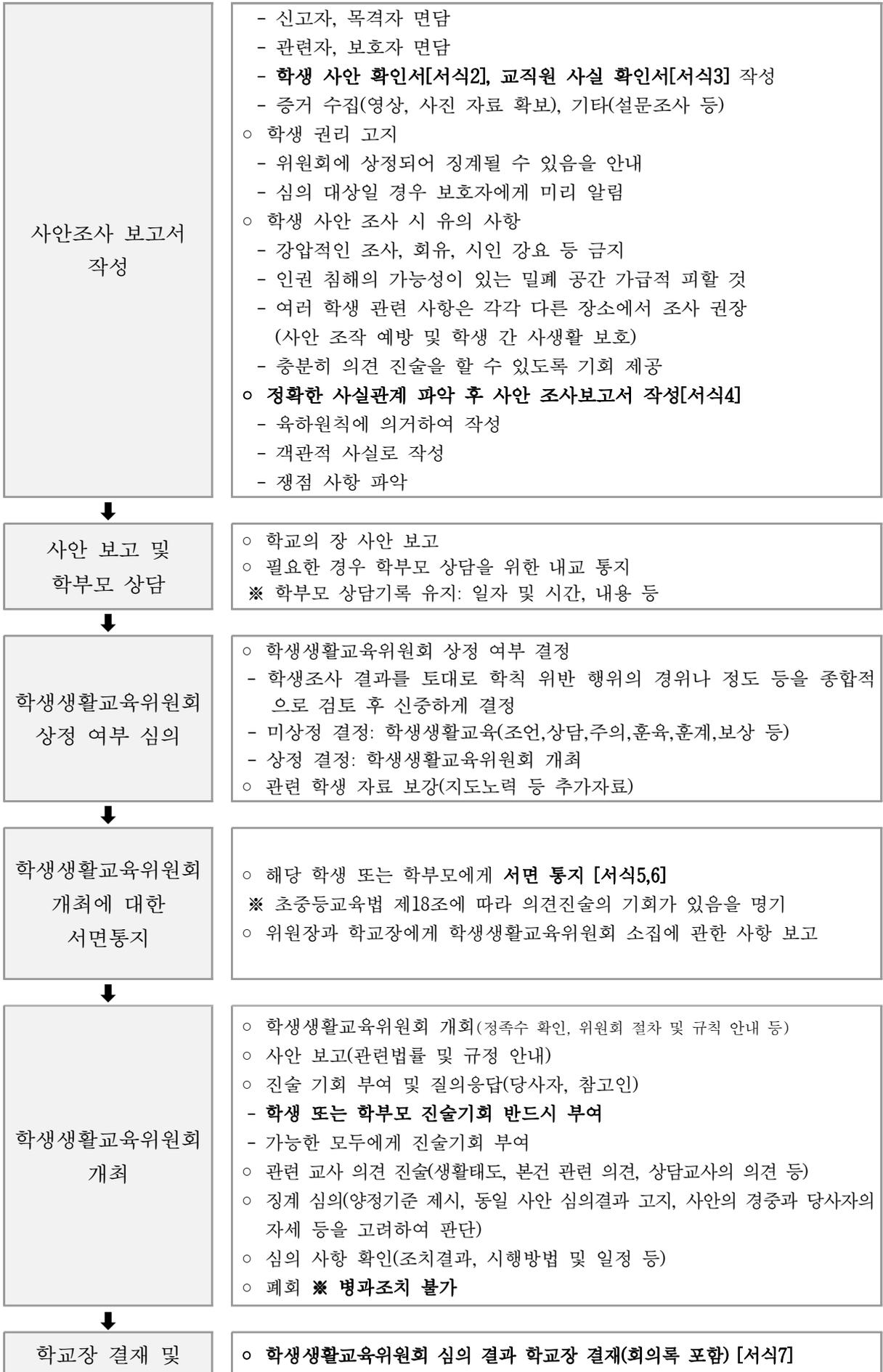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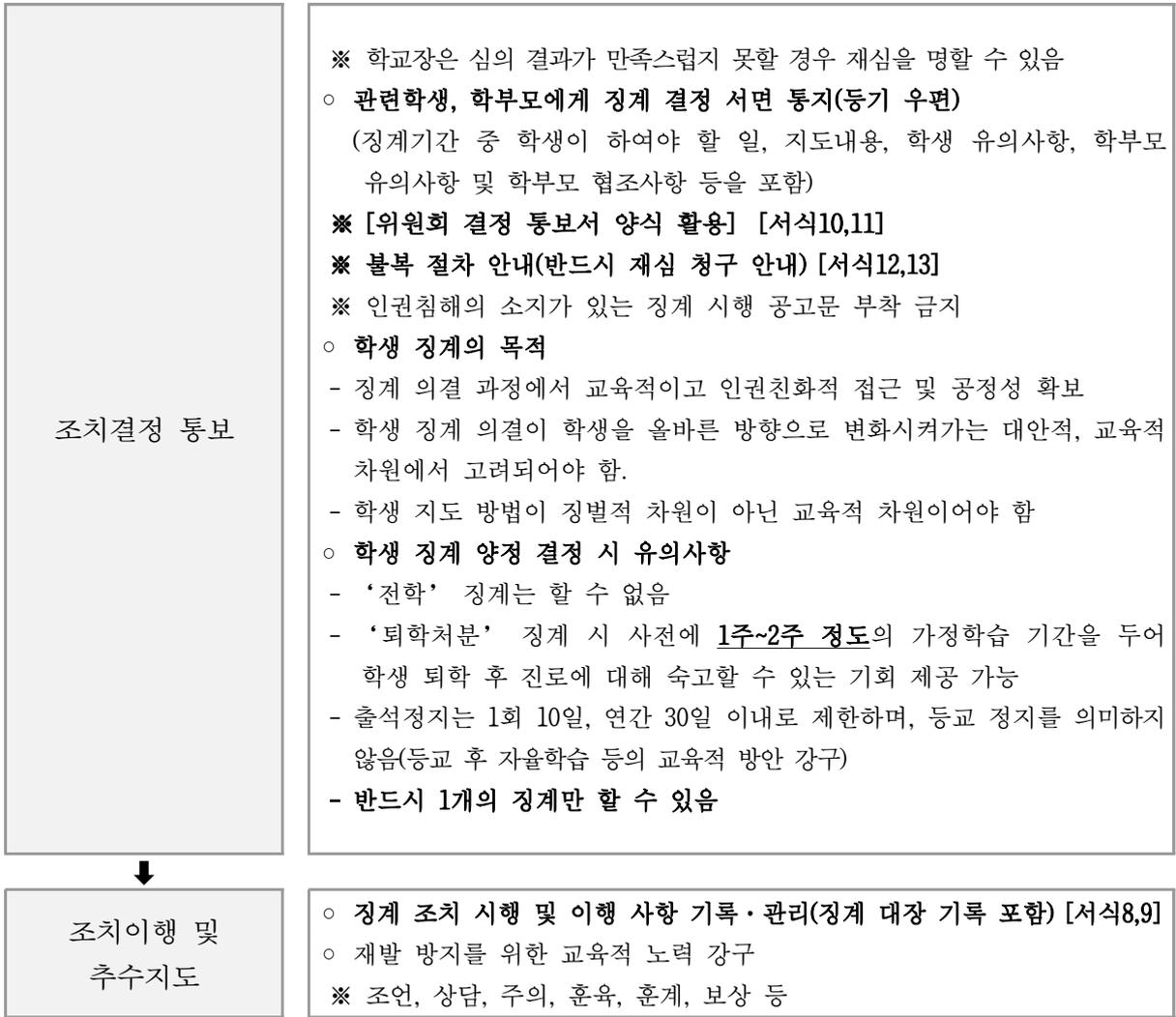
-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 대상 사안 또는 대상 학생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
- 위원회는 출석한 학생과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와 방법 제공
- 위원회 심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관리
- 위원회 위원 또는 간사 등 위원회 참석자는 심의 내용 및 결과, 그 밖에 사안 또는 대상 학생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누설 금지

2-2 사안 처리 과정 및 세부내용

2-2-1 사안 처리 과정 흐름도

처리 과정	주요 처리 내용				
사안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 인지 ○ 사건 내용 파악, 사실 여부 확인 ○ 사안의 경중에 따른 교육적 구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경미 사안</td> <td>담임교사 인계 → 현장 생활교육</td> </tr> <tr> <td>중대 사안</td> <td>인성인권부로 인계 → 사안 접수, 위원회 회부</td> </tr> </table> <p>※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생생활교육 위원회에서 심의 금지)</p>	경미 사안	담임교사 인계 → 현장 생활교육	중대 사안	인성인권부로 인계 → 사안 접수, 위원회 회부
경미 사안	담임교사 인계 → 현장 생활교육				
중대 사안	인성인권부로 인계 → 사안 접수, 위원회 회부				
↓					
사안조사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 접수[서식] ○ 관련 학생 조사 및 객관적 증거 확보 				







2-2-2 사안처리 세부내용

1. 사안 발생

■ 사건 내용 파악 및 사실 여부 확인

사안 처리 초기 단계에서는 해당 신고내용이 규정 위반 내용이 맞는지 오인 신고가 아닌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사실 여부의 확인 없이 신고내용을 사실로 가정하여 지도 하였을 경우, 해당 학생의 억울한 부분을 미처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신고내용 확인: 신고자의 신고내용과 해당 사건과의 사실 여부 확인(오인 신고 여부 확인)
- 학생생활규정 위반 내용 파악: 관련자 면담에 의한 사건 경위 및 위반 내용 파악

■ 현장 생활 교육

사안 발생 시 생활교육 담당교원에게 인계하기 이전, 최초 발견·인지 교원이 사안의 경중을 살펴본 후 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 현장에서 다양한 학생생활교육(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적 선도를 목적으로 학생에게는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사안 신고 및 접수, 위원장(학생생활교육위원회) 보고

-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생활교육 담당 부서에 관련 사안 신고 및 인계
- 사안의 신고 및 접수
 - 학교 구성원이 신고한 경우: 사안접수대장에 신고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 및 학교의 장에게 보고
 - 외부인이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연락처 확보, 위반 학생의 신상, 위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후 사안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위원장 및 학교의 장에게 보고
- 사안접수대장: 신고자/기관, 신고일시, 신고내용, 접수자 등을 기록 후 위원장 및 학교의 장 보고



사안 발생 장소·시간별 사안 처리(예시)

① 학교 밖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의 경우:

수련회와 같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일지라도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생생활규정 위반 행위라면 학교별 학생생활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이에 따라 관련 사안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한 학생 선도 절차를 따름. 단, 학교별 학생생활규정에 의거 학교 내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예시> ‘칼, 가위 등의 흉기 소지 불가’(교육활동 중인 경우 장소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규정): 징계 가능
 ‘음란물 제작·소지·유포 불가’(장소에 상관없는 규정): 징계 가능
 ‘교내에서는 실내화 착용’(학교 건물에만 국한되는 규정): 징계 불가

②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의 경우:

정규교육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더라도 자율동아리, 방과 후 활동과 같이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교육활동에 해당함. 이러한 항목의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한 학생 선도 절차를 따를 수 있음.

※ 예시> ‘학교 기물파손’(정규교육과정 시간 외에도 적용되는 규정): 징계 가능
 ‘수업 시간 휴대폰 사용 금지’(방과 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 징계 불가

③ 교육활동이 아닐 때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안의 경우:

학원과 같이 학교도 아니고 교육활동 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때와 장소에서 발생한 학생생활규정 위반 행위의 경우, 장소와 상관없이 교육활동 이외의 시간에도 적용되는 학생생활규정의 항목인 경우에만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학생 선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예시> ‘흡연·음주 금지’(장소와 상관없이, 교육활동 이외의 모든 시간에 적용 가능 규정): 징계 가능
 ‘수업 시간 태도 불량’(학원 수업 시간에는 해당하지 않는 규정): 징계 불가

2. 사안 조사

■ 관련자 조사

사안 조사의 경우 신고자·목격자·관련자와 면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게 된다. 이때, 신고자·목격자·관련자 간 진술 내용을 비교·분석하며 해당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 신고자·목격자 면담: 신고내용 및 규정 위반 내용 확인, 목격 정황 파악 및 증언 확보
- 관련 교원·관련자 면담: 사건 정황 및 경위 파악
- 규정 위반 학생 및 보호자 면담: 구체적인 사건 정황 및 경위 파악, 해당 사안에 관한 의견 확인
- 사실 확인서(의견서 등):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



사안 조사 시 유의 사항

구분	유의 사항
학생 및 보호자 안내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안 접수 사실 및 내용,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상정 심의 대상임을 안내 사안 처리 절차, 사안 조사 실시 계획을 사전 안내
인권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압 및 거짓 회유에 의한 진술을 받지 않음 면담 조사의 경우 가급적 2인 이상의 교원이 참여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관련 내용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에서 조사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관련 내용을 누설 금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조사하되, 긴급한 사유가 있고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시 예외적으로 수업결손 대책을 수립하여 조사 수업 시간에 사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수업 시간에 최소한으로 사안 조사를 하되, 추후 보충 수업이 이뤄져야 함
신상정보 및 관련 내용 누설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선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학생에 관한 신상정보 또는 관련 내용, 신고자 목적자의 신상정보 또는 관련 내용 그리고 사안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사실과 내용은 누구든지 외부로 누설 금지
면담 내용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보호자, 관련자와의 면담 일시, 방법, 내용 등을 기록(면담일지, 교무수첩 등)
학생 사안 확인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 보호자, 대리인에 의한 작성 및 컴퓨터,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도 인정 단, 해당 학생의 서명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관련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 정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사안에 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여건(공간, 장소, 시간 등)을 마련하여 제공

■ 입증 자료 수집

사안 조사의 경우 신고자·목적자·관련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사실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 증거 수집-물증, 증언 확보
- 영상(CCTV 등), 사진, SNS 등의 자료 확보
- 기타(설문조사 등)

■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 정황, 쟁점 사항을 사안조사 보고서에 기록한다.

- 신고자·목격자·관련자의 진술 내용을 비교 및 분석하여 도출된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
- 의견 대립 또는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고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양측의 의견과 주장을 모두 기록
- 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목격자가 증언을 거부하여도 다른 자료에 의해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근거 자료를 명시하여 관련 내용 기록
- 사건 정황, 사건 경위 파악에 도움이 되거나 평소 행실 및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등 해당 학생의 조치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 해당 의견(참고인 : 현장 지도교원, 담임교사 등) 기록
- 담당 부서(업무담당교원)는 조사 내용 및 결과를 정리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 사안 보고 및 학부모 상담

사안 조사가 마무리되면 생활교육 담당자는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는 조사 내용을 통지하되, 신고자·목격자의 신상정보나 구체적 진술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관련 학생과 보호자가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가 작성, 제출한 자료만을 공개하고 신고자·목격자의 신상정보나 구체적 진술이 기재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 학교의 장 보고 : 사안조사 보고서
- 담임교사 및 관련자 통지 : 사안 조사 내용 통지
- 관련 학생 및 보호자 통지 : 해당 학생의 사안 조사 내용 통지, 차후 선도(징계) 절차 안내



사안조사 보고서의 사안 개요 작성 요령(예시)

사례 2024년 00월 00일(○요일) 13시 30분 5교시 수학 시간, 2학년 5반 교실에서 학생 A, B가 교실 벽에 낙서함. 같은 반 친구들이 이를 목격하여 해당 수업 종료 직전 수학 선생님께 이 사실을 신고함. 이에 해당 교원은 수업을 마친 14시 10분경 낙서로 더러워진 벽을 발견하였고 A, B에게 낙서를 지우도록 지도함. B군은 낙서한 사실을 부인하며 해당 교원의 지도에 불응함.

작성 방법	작성 요령
규정 위반 시간순 정리	① 2024년 00월 00일 5교시 수학 수업 중(13시 30분경) 2학년 5반 교실에서 A, B가 벽에 장난으로 낙서함. ※ [A 주장] : 심심해서 장난으로 낙서함(사실 확인서) ※ [B 주장] : 낙서한 사실 없음(사실 확인서) ※ [목격자 주장] : 낙서한 장면을 목격함(사실 확인서)(증거1 : 낙서 사진)
	② 수업 종료 직전(14시경) 같은 반 목격 학생이 이를 수학 선생님께 신고함. ※ [A 주장] : 그때 낙서하는 장난을 그만함(사실 확인서) ※ [B 주장] : 낙서한 사실 없음(사실 확인서)
	③ 수업 종료 후(14시 10분경) 선생님이 A, B에게 낙서를 지우도록 지도함. ※ [A 주장] : 낙서한 사실 인정하고 반성함(사실 확인서) ※ [B 주장] : 낙서한 사실 없는데 지우라고 해서 억울함(사실 확인서)



	④ A는 지도에 따르며 낙서 지움. B는 지도에 불응함. ※ [B 주장]: 벽에 낙서한 사실이 없으니 지움 이유 없음(사실 확인서)
규정 위반 사안별 정리	① [낙서] 2024년 00월 00일 5교시 수학 수업 중(13시 30분경) 2학년 5반 교실에서 A, B가 벽에 장난으로 낙서함. ※ [A 주장]: 심심해서 장난으로 낙서함(사실 확인서) ※ [B 주장]: 낙서한 사실 없음(사실 확인서) ※ [목격자 주장]: 낙서한 장면을 목격함(사실 확인서)(증거1: 낙서 사진) ② [지도 불응] 2024년 00월 00일 5교시 수학 수업 종료 후(14시 10분경) B는 낙서를 지우려는 수학 선생님의 지도에 불응함. ※ [B 주장]: 낙서한 사실 없는데 지우라고 해서 억울함(사실 확인서)
규정 위반 학생별 정리	① [A의 위반 행위: 낙서] 2024년 00월 00일 5교시 수학 수업 중(13시 30분경) 2학년 5반 교실에서 A가 B와 함께 벽에 장난으로 낙서함. ※ [A 주장]: 심심해서 장난으로 낙서함(사실 확인서) ※ [목격자 주장]: 낙서한 장면을 목격함(사실 확인서)(증거1: 낙서 사진) ② [B의 위반 행위: 낙서, 지도 불응] 2024년 00월 00일 5교시 수학 수업 중 2학년 5반 교실에서 A가 B와 함께 벽에 장난으로 낙서함. 수학 수업 종료 후(14시 10분경) B는 낙서를 지우려는 수학 선생님의 지도에 불응함. ※ [B 주장]: 낙서한 사실 없는데 지우라고 해서 억울함(사실 확인서) ※ [목격자 주장]: 캐릭터 그림 그리며 낙서함(사실 확인서)(증거1: 낙서 사진)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상정 여부 심의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사안 조사가 끝나면 담당 부서는 관련 사안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상정 여부를 협의해야 한다. 이때 협의는 사안의 유형, 심각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미상정 결정 시 학생징계 이외의 다양한 학생생활교육 방안을 마련·적용해야 한다.

- 위반 행위 유형, 심각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미상정 시 학생징계 이외의 다양한 학생생활교육 방안 마련
 -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
 - 훈계,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문제행동 시정을 위한 대안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 포함)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 훈계 시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 방안과 함께 제시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상정 여부 결과 보고

학생징계의 결정권자는 학교의 장으로 해당 사안의 생활교육위원회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단, 학교별 '위임·전결 규정'에 의거 담당 부서에 위임된 경우 담당 부서의 결재를 통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학교의 장 결재 필요. 단, 학교별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결재 시행 가능(내부기안)
- 학생 및 보호자 통지: 해당 학생의 상정 여부 결과 통지, 차후 선도 절차 안내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 ④ 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 ⑥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⑦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 계획 수립

해당 사안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가 결정되면 개최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 관련 학생과 보호자가 해당 사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 개최 시기: 규정 위반 내용에 관해 소명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고려하여 선정
- 개최 일시: 학생 및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일자 및 시간으로 선정(사전 협의)
- 개최 장소: 학교별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
- 대기 장소: 사안별 여러 학생이 상정된 경우 별도의 개별 대기 장소 마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시 준비사항(예시)

목록	준비사항
장소 확보	회의실, 개별 대기 장소
참석 인원 확인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참고인(담임교사 등)
관련 서류 준비	학교별 학생생활규정,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관련 규정, 사안조사보고서, 사실 확인서, 참고인 의견서, 각종 입증자료, 징계 의결서 등
운영 물품 준비	의사봉, 위원명패, 위원용 필기도구, 간사용 노트북(회의내용 기록) 등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통지 및 참석 안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일정이 정해지면 개최 관련 내용을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학생과 보호자가 개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통지하고, 규정 위반 행위에 관해 소명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 학교의 장: 개최 사실, 개최 내용 보고(내부기안)
- 위원, 관련자, 참고인(담임교사): 개최 내용 통지
-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서면 통지(등기우편, 내용 증명 가능), '서면 의견서' 첨부(진술 기회 보장)
- 관련 학생 및 보호자가 소명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 기간 내 통지(개최 전 7일 이상 권장)
- 긴급한 사안의 경우, 학생 및 보호자 동의 시 구두 또는 SMS(문자메세지) 등으로 개최 통지 가능 (단, 통지 사실, 방법, 내용 등을 반드시 기록)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통지 시 학생·보호자 고지 사항(예시)

- ① 위원회 명칭(학생생활교육위원회)
- ② 상정 대상 학생의 성명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대기 장소 포함)
- ④ 규정 위반 내용(개최 및 참석 사유), 근거 및 법령(초·중등교육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OO학교 학생생활규정 제0조)
- ⑤ 대리인 선임 가능함을 고지
- ⑥ 의견 진술의 기회임을 고지(단,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
- ⑦ 위원회에 불참하고 서면 의견서 또한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을 고지
- ⑧ 위원회 참석 시 신분증 지참 및 소명 추가자료 제출 가능 고지
- ⑨ 의견제출 기관명, 주소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학생징계 조치 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점은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별 「학생생활규정」에 의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징계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 관련 학생, 보호자의 의견 진술 및 소명의 기회 부여
- 필요에 따라 참고인 의견 청취 가능
- 법령과 학칙 내에서 징계 조치 의결
- 이중 징계, 병과 조치 불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거듭 징계하거나 동시에 두 개 이상 조치를 할 수 없음
- 징계 조치 및 절차의 객관성·공정성·형평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 ④ 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 ⑥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⑦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결재 및 조치결정 통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해당 학생의 징계 조치가 결정되면 최종적으로 징계 결정권자인 학교의 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되게 된다. 이때, 조치 결과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학교의 장 결재: 학생징계 조치 최종 결정
- 학생 및 보호자 서면 통지: 등기우편(내용 증명 가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서면 통지 시 고지 사항(예시)

- ① 처분 제목(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 결정 통지서)
- ② 징계 대상 학생의 성명
- ③ 위반 항목, 처분 근거(초·중등교육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학교 학생생활규정 제○조)
- ④ 징계내용, 징계사유
- ⑤ 재심의·재심 및 행정심판·소송 등의 불복절차(청구 절차 및 기간)
- ⑥ 조치 기관명, 주소

2-3 불복 절차 통지 및 안내

■ 불복 절차 통지 및 안내

심의 결과를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 해당 사항에 관한 불복절차¹⁾에 대해 서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 재심의·재심 및 행정심판·소송 등의 불복(구제) 제도 및 절차 안내
- 불복 제도 및 절차의 통지는 서면으로 통지

■ 징계 불복 방법 및 종류

구분	재심의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주관	학교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법원
주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생징계조정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법관
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계 처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퇴학처분	하위 기관에 내린 처분 등	법원 관할 모든 행정기관의 처분
결정 형식	의결	의결	재결	판결
불복 방식	행정심판·소송	행정심판·소송	행정소송	3심제

1) 불복절차: 법원의 결정이나 행정 기관의 처분 따위에 복종하지 않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재심청구)

-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2. 피청구인
 -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②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④ 징계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통지 시 학생·보호자 고지 사항(예시)

불복방법 (구제 방법)	내용(안내 사항)
재심의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의 징계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조치 결정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재심의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 서식에 따라 신청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재심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 자체 또는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 조치집행을 유보함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결정 및 심의 내용,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재심 신청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심의 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심의 여부 결정은 제소 기간(최대 90일) 등을 고려하여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 결정 권장 ▶ 안내 사항 아님 재심의 신청이 인용될 시, 위원회는 재심의 실시 위원회는 원 조치 절차와 같이 재심의를 하며,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음 재심의와 관련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재심 (시·도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대상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재심이 청구되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퇴학 조치의 집행이 유보됨 재심청구는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② 피청구인 ③ 퇴학 조치 일자 및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④ 청구 취지 및 이유
행정심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퇴학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징계조정위원회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심판청구의 구체적 방식은 「행정심판법」에 따름
행정소송 (민사소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행정소송의 구체적 방식은 「행정소송법」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의 경우 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근거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TIP

조치 불복 제기 시 징계 조치의 집행 방법

행정심판·소송의 제기	집행정지 결정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이상 징계 조치 시행 및 이행	집행정지 결정일부터 집행정지 결정문에 기재된 일시까지 징계 조치 집행정지(징계 시행 유보)

■ 전북특별자치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 대상: 국·공·사립학교 학생 퇴학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전북특별자치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 서면(①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② 피청구인 ③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④ 청구 취지 및 이유 기재) 징계조정위원회에 제출
 - 재심 신청 시 조치(징계) 집행 유보
- 제출 안내

- [청구인] 제출 자료
 - [필수] 재심청구서, 위원회 결정 통보서
 - [권장] 청구사유서, 학생 반성문, 보호자의 지도 계획서 등
- [학교] 제출 자료
 - [필수] 위원회 회의록, 사안 조사서, 담임 또는 학생부장 의견서
- 제출 관련 기타 안내
 - 우편: (5506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전북특별자치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 팩스: 063-220-9411
 - 문의: 063-239-3481



■ 징계(선도) 조치 이행 계획 수립

최종 징계 결정의 내용을 확인하여 가장 적합한 의뢰·이행 기관을 선정하고 가장 알맞은 이행시기를 선정해야 한다. 단, 출석정지에 대한 이행 계획 수립 시 학습결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 징계 이행 일자 선정(고사 기간 제외)
- 징계 기관 및 담당자 선정에 따른 징계 이행 의뢰
- 징계 이행에 따른 학습결손 대책 마련(출석정지에 따른 학습권 보장)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④ 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석정지에 따른 학습결손 대책 방안(예시)

방안	내용
과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별 일정 과제를 수합하여 해당 학생에게 부여
비대면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 대면 수업 장면 실시간 중계 ▪ 대면 수업 장면 녹화 후 제공
수업 콘텐츠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콘텐츠 제작 후 제공 ▪ 제작된 관련 수업 콘텐츠 제공(YouTube, EBS 등)
방과 후 보충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 후 교과별 보충수업 실시

■ 징계(선도) 조치 이행

학교의 장의 최종 징계 결정에 의거 해당 학생에게 부과된 징계 조치는 빠른 시일 내에 이행시키도록 한다.

단, 해당 징계 조치는 관련 학생과 보호자가 '생활교육위원회 조치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이행시켜야 한다.

- 소속 교원(담임교사 등) 또는 담당교원을 통한 징계 이행
- 담임교사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해당 학생의 출결 사항 안내(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
- 학교 밖 위탁기관에서의 징계 이행 시 해당 담당자와의 연락체계를 확보하여 협력
- 징계기록 및 관련 학생의 개인정보 등에 관한 징계 관련 내용 일체 공고 금지

■ 징계(선도) 조치 이행 결과 보고

해당 학생이 징계 조치를 모두 이행하면 관련 이행 결과를 학교의 장에 보고한다. 이때, 징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학교별 학생생활규정을 통해 징계 조치 미이행에 따른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상정 및 이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 학교의 장 보고: 징계 조치 이행 보고(내부기안)
 -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안내: 징계 조치 이행 완료 사실 안내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대장 기록·관리(징계내용, 징계 이행 일시 및 여부 등)
 - 징계 조치 미이행 시 재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상정 및 징계 가능(단, 근거 규정 필요)
-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조치 미이행 또는 불성실한 이행시의 지도 방안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상정 가능 근거 조항이 학생생활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2-4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 시나리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 시나리오(예시)

※ [주의]

본 시나리오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진행과 위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회의시나리오 예시 자료입니다. 사안의 특성, 상황, 여건 등에 따라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장 소 :
- 위원정수 : 명 ○ 참석위원 : 명 ○ 불참위원 : 명
- 심의 안건: ○○○ 학생 절도, 흡연, 일반인 폭행, 기물 파손 등의 건

☞ 개회

절차	세부 진행 발언
정족수 확인	(위원장) 간사는 성원을 보고해주세요. (간 사) 재적 위원 ○○명 중 ○○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개회 선언	(위원장) 본교 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의거 회의 개최 성원이 충족되었으므로 ○○학년도 ○○차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인사	(위원장)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번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초등(중·고등)학교 학생징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법률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적 선도 결정을 내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건 상정

절차	세부 진행 발언
주의사항	(위원장)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몇 가지 안내합니다. (위원장) 첫째, 위원들은 사안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대상 학생에 관한 정보, 심의 내용 및 결과, 그 밖의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건 상정	(위원장) 다음으로는 본 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건 사안 번호 24-00호, ○학년 ○반 ○○○학생에 관한 징계 심의안을 본교 00차 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 제척·회피 여부 확인

절차	세부 진행 발언
제척·회피	<p>(위원장) 안건 심의에 앞서 위원의 제척, 회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분께서는 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 회피 사유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p> <p>(간 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척, 회피 사유 설명)</p> <p>☞ ○○초등(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제척·회피·기피)</p> <p>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00조 제00호부터 제00호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이거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안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p>② 당사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p>
	<p>(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의할 사안과 관련하여 제척 사유에 해당하시거나 회피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 사안 보고

절차	세부 진행 발언
사안 보고	<p>(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의 내용 및 사안의 경위, 사안조사보고서, 사실 확인서 등을 참고하시고, 조치 결정을 위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위원장) 먼저 간사분께서는 사안별 사안조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p> <p>(간 사) 네, 사안 번호 24-00호의 조사된 사건 내용 및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사안 설명)</p>
	<p>☞ 사안조사보고서</p> <p>2024년 0월 0일 00시경 김○○ 학생이 ○편의점에서 친구(이○○)와 함께 ○담배 한 갑을 구매하였습니다.</p> <p>2024년 0월 0일 00시경 본교 근처 ○아파트 놀이터에서 김○○는 흡연을 하였고 이○○는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나가던 박○○ 학생이 목격하여 교원 ○○○에게 신고였고 교원 ○○○가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흡연 학생을 지도하였습니다.</p> <p>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한 CCTV 영상 증거를 확보하였고, 현재 이○○는 흡연할 목적이 없었고 김○○가 함께 가자며 억지로 끌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가 흡연할 당시 실제로 이○○는 흡연하지 않은 사실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p>



절차	세부 진행 발언
	(간 사) 이상입니다.
조사 내용 확인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자료 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간사분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학생 및 참고인 인권 진술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학생 및 보호자 (대리인) 입장	(위원장) 사안 번호 24-00호 학생 및 보호자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분께서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대리인)를 본 위원회에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 및 관계 확인	(학생 및 보호자, 대리인과의 인사) (위원장) 바쁘신 와중에도 학생의 교육과 선도를 위한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먼저 신원 및 해당 학생과의 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분께서는 학생과 보호자님, 대리인의 신원과 해당 학생과의 관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원확인에 이어서 기피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피 신청에 관한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 제00항의 기피 사유에 관해 간사분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네,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 제00항에 의거 당사자의 본 위원회 위원 기피 해당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피 사유 설명)
기피 신청	☞ ○○초등(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00조 제00호부터 제00호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해당 안전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이거나 해당 안전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기피 신청	(간 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그럼,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오늘 심의할 사안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거나 제척 및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위원장) 다음으로 생활교육위원회 주의사항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첫째, 발언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절차	세부 진행 발언
	<p>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욕설, 폭언, 폭행할 경우 퇴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 제00항에 의거 회의 참석자 전원은 위원회에 참여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교육적 선도 조치를 결정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p> <p>(위원장) 이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협조해 주시고,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 및 행정심판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p>
<p>조사 내용 사실 확인</p>	<p>(위원장) 다음은 본교에서 조사한 ○○○학생의 사안 조사 내용입니다. 간사분께서는 ○○○학생의 사안 조사 내용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학생의 사안 조사 내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사안 설명)</p> <p>☞ ○○○학생 사실 확인서 (사안조사보고서 일부 활용 가능)</p> <p>사안 번호 24-00, ○○○학생의 ‘흡연’ 규정 위반 사안입니다. 2020년 0월 0일 00시경 김○○ 학생이 ○편의점에서 친구(이○○)와 함께 ○담배 한 갑을 구매였습니다. 2020년 0월 0일 00시경 본교 근처 ○아파트 놀이터에서 김○○는 흡연을 하였고 이○○는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후 ○○○선생님에게 들켜 지도받았습니다.</p> <p>(간 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설명한 ○○○학생의 사안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실 경우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의견 진술, 질의응답, 추가자료 제출 등)</p> <p>(위원장) 위원분들은 본 사안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내용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학생과 보호자님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p>
<p>학생 및 보호자 최종 진술</p>	<p>(위원장) 마지막으로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과 의견, 소명하실 내용 등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사후 과정 및 불복절차 안내</p>	<p>(위원장) 성실히 응답해 주신 ○○○학생과 보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조치 결정은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본 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또한 서면으로 통지되며, 궁금하신 내용은 담당교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귀가하셔도 좋습니다.</p>
<p>참고인 입장</p>	<p>(위원장) 간사분께서는 참고인 ○○○를 입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네, 알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참고인 입장)</p>



절차	세부 진행 발언
참고인 질의응답 및 소견 청취	<p>(위원장) 위원분들은 본 사안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내용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참고인분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p> <p>(위원 질의, 참고인 응답)</p> <p>(위원장)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참고인 ○○○분의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p> <p>(참고인 소견 청취)</p> <p>(위원장) 이상으로 참고인 ○○○님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p>
📄 조치 심의 · 인결 및 폐회	
절차	세부 진행 발언
규정 위반 여부 확인	<p>(위원장) 이제부터 학생생활규정 위반 여부에 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p> <p>(위원들 간 학생생활규정 위반 행위 여부 협의)</p>
징계 결정	<p>(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p> <p>(위원장) 사안 번호 24-00호 ○○○학생의 징계 조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 ○명 중 ○명이 '사회봉사 4시간' 조치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 제00항에 의거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로서 재적 위원 ○명 중 ○명이 참석하였고, 참석위원 ○명 중 ○명이 '사회봉사 4시간'에 대한 징계 의견을 주셨기에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 제00항 과반수의 의결조건을 충족하여 ○○○학생에게 '사회봉사 4시간' 징계(선도) 조치를 결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조치 기준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유의, 병과 조치 불가</p>
폐회 선언	<p>(간 사) 위원장님의 폐회 선언이 있겠습니다.</p> <p>(위원장) 이상으로 00학년도 ○○초등(중·고등)학교 제00차 생활교육위원회를 마치며 폐회를 선언합니다.</p> <p>(위원장)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p>

2-5 관련서식

[서식 1] 학생생활교육 사안접수대장(예시)

학생생활교육 사안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접수자	접수내용	접수 사실 통보 및 보고	
				관련 학생 보호자	학교장
2024-1	2023.03.03. 11:30	○○○ (교사)	2024.4.3.(수) 15:30 1학년 김00이 1층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됨.	2024.4.4 00:00 (전화)	2024.4.4 00:00 (대면)
2024-2					



[서식 2] 학생 사안 확인서(예시)

학생 사안 확인서 예시(관련, 목격)

* 접수번호: 2024-00

성명		보호자 성명 / 관계	/
학년 / 반	/	본인 연락처	
성별	남 / 여	보호자 연락처	
사 안 내 용	누 가	(관련 학생 모두)	
	일시 / 기간	발생 일시: 20 년 월 일 시경 / 0개월 간 00정도	
	어디서	학교 안() 학교 밖()	
	무엇을 / 어떻게 / 왜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	
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작성 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서식 3] 교직원 사실 확인서(예시)

교직원 사실 확인서(예시)

* 접수번호: 2024-00

성명		관련 학생	성명	
소속 / 직책	/		학년 / 반	/
※ 사건 경위, 목격 사실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히 기재하세요.				
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서식 4] 사안조사 보고서(예시)

사안조사 보고서(예시)

* 접수번호: 2024-00

접수 일자	2024.00.00	학생생활규정 위반 사항		① 흡연을 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② 반복적으로 흡연을 한 학생		
관련자	소속	학년 / 반 (직책)	성명	구분 (위반/관련/목적)	징계 이력	
	○○학교	○/○	○○○	위반자 (위반 사실 명확)	절도 / 학교내의 봉사 5시간 (20 .0.00.~20 .0.00.)	
	○○학교	○/○	○○○	위반자 (위반 사실 불명확)	없음	
	○○학교	교사	○○○	관련자 (지도교사)		
	○○학교	○/○	○○○	목격자		
사안 개요	<p>○ 2024년 0월 0일 00시경 김○○ 학생이 ○편의점에서 친구(이○○)와 함께 ○담배 한 갑을 구매함.</p> <p>○ 2024년 0월 0일 00시경 본교 근처 ○아파트 놀이터에서 김○○은 흡연을 하였고 이○○는 함께 그 자리에 있었음. 이 모습을 지나가던 박○○ 학생이 목격하여 교원 ○○○에게 신고함.</p> <p>○ 교원 ○○○가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흡연 학생을 지도함.</p>					
쟁점 사항	○ 이○○의 흡연 동조 여부: 이○○는 흡연할 목적이 없었고 김○○가 함께 가자며 억지로 끌고 간 것이라고 주장함. 김○○가 흡연할 당시 실제로 이○○는 흡연하지 않은 사진을 근거로 제시함.					
징계 규정	성명	징계 규정	징계 기준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김○○	반복적으로 흡연을 한 학생			○	○
	이○○	흡연을 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	○	○	○
기 타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서식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참석 요청서(예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참석 요청서(예시)

본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의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니 관련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리인 선임을 통한 의견 진술 역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부득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도 않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개최 일시			사안번호	
개최 장소			대기 장소	
개 최 사 유	관련 학생 성명		학년/반	/
	사안 발생 일시			
	사안 발생 장소			
	위반 행위 내용			
	관련 규정			
담당자	교원 ○○○	연락처	○○-○○○○-○○○○	
<p>※ 참고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석하실 때는 이 요청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기타 소명자료 제출 또한 가능합니다. 관련 학생·보호자께서는 회의 당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첨부한 서면 의견서(별지 양식)를 작성하여 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전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담당자(전화: 000-00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장 (직인)</p>				



[서식 6] 서면 의견(진술)서

서면 의견(진술)서

관련 학생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p>상기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의견을 대신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p>			
<p>생활규정 위반 사실에 대한 의견</p>			
<p>요구 사항</p>			
<p>기타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학생 (서명) 보호자 (서명) </p>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귀중</p>			

[서식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예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예시)

접수 번호	2024-00				
일시	2024. 3. 00.(금요일) 00:00		장소	000실	
참석 위원 (확인)	○위원정수 : 0명		○참석위원 : 0명		○불참위원 : 0명
	000	000	000	000	000
안건	접수번호 2024-0 000학생의 교내흡연 건				
회의 내용	- - - - -				
성명	학년 / 반	징계 결정 심의 결과			
		징계내용	징계 수준	징계 기간	징계사유
김○○	○ / ○	특별교육이수	○시간	20 .00.00.~ 20 .00.00.	반복적 흡연
이○○	○ / ○	학교내의 봉사	○시간	20 .00.00.~ 20 .00.00.	흡연 동조



[서식 8] 교내봉사 활동일지(예시)

교내봉사 활동일지(예시)

이름		규정 위반 내용	흡연
학년 / 반	/	징계 조치 내용	학교내의 봉사
학생 연락처		징계 조치 일수	○시간
보호자 연락처		징계 이행 기간	20 ~

○○초등(중·고등)학교 ○○부 담당자 ○○○ ☎ 00-000-0000

일차	활동 일시 (시간)	집합 장소	활동 내용	지도교원 확인	비고
1	20 (○시간)	○층 ○교무실	교내외 환경미화	교원 ○○○ (서명)	
2					
3					
4					
5					
6					
7					
8					
9					
10					
성실하게 잘한 내용 (지도교원 작성)					
불성실하게 임한 내용 (지도교원 작성)					

☞ 활동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미이행 시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음



[서식 10] 위원회 결정 통보서(퇴학처분 조치 예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 통보서 (퇴학처분 조치 예시)

학생생활규정 제○조 제○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조치를 의결하고 집행을 요청한 바, 관련 학생 및 보호자는 조치 결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학생	학년 반 이름 :	
관련 세부 규정	학생생활규정 제○조 제○항	
위원회 개최일	20○○년 ○월 ○일	
징계 조치	퇴학처분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본 조치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치를 받는 날로부터 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인권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퇴학처분 재심 안내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 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063-239-3481)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이의 제기 및 불복 절차 안내	국공립학교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사립학교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학교 담당자 : ○○○, 전화 063-000-0000)

20 . . .

○○ 학교장 (직인)

[서식 11] 위원회 결정 통보서(퇴학처분 제외 예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 통보서 (퇴학처분 제외 예시)

학생생활규정 제○조 제○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조치를 의결하고 집행을 요청한 바, 관련 학생 및 보호자는 조치 결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학생	학년 반 이름 :	
관련 세부 규정	학생생활규정 제○조 제○항	
위원회 개최일	20○○년 ○월 ○일	
교육(징계) 조치	교내봉사 ○일 (20 년 월 일 ~ 월 일)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본 조치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치를 받는 날로부터 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인권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이의 제기 및 불복 절차 안내	국공립학교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사립학교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학교 담당자 : ○○○, 전화 063-000-0000)

20 . . .

○ ○ 학 교 장 (직인)

[서식 13] 징계(전학, 퇴학) 재심 청구서

재심 청구서(예시)

청구인	학생	성명		소속	() 학교 ()학년 ()반					
	주소									
	보호자	성명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인 피청구	학교명	OO학교 학교소재지 : OO구		학교장 성명	조치	퇴학				
조치를 받은 날 (위원회 개최일)		20	년	월	일	조치가 있음을 안 날	20	년	월	일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4. 1.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퇴학조치의 취소를 구합니다.								
청구 이유 (요지만 간단하게 작성하고 별지에 상세히 기술)										
<p>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 : (‘서명’ 또는 ‘기명+날인’)</p> <p style="text-align: right;">전북특별자치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귀중</p>										
<p>◎ 재심청구 기한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입니다.</p> <p>◎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필요시 자료 및 정보 제출, 학생과 보호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 전북특별자치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p>										



[서식 14] 학생 징계 관련 사안 보고

결 재	담 임
	전 결

학생 징계 관련 중대 사안 보고(언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지원청

○○○ 학 교 장

학교장 직인

학교명 : ○○학교	교장	성명: ○○○ H·P: 000-0000-0000	교감	성명: ○○○ H·P: 000-0000-0000
관련 학생	(학 교) (학 년) (성 명) (성 별)			
	(학 교) (학 년) (성 명) (성 별)			
발생 일시	2024.00.00.00:00		보고 날짜	2024.00.00.
접수 날짜	2024.00.00.			

사건장소 및 주요 내용	※ 자세하게 작성 요망
-----------------	--------------

특이사항	※ 언론 보도 및 경찰 고소 내용, 특수교육 대상 학생, 장애학생 여부 등
------	---

위 원 회 개최(예정)일	2024년 0월 0일 0시
------------------	----------------

조치 사항(조치 사항이 있으면 기록)

구 분	조치 사항
관련 학생	○○○ :
	○○○ :

향후 계획

학 교	○ 상담 등의 조치 지속적인 실시 등			
교육지원청	○ 관련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도 당부 등			
작성자	학교	직위 :	성명 :	전화 :
	교육지원청	직위 :	성명 :	전화 :

[서식 15] 징계(전학, 퇴학) 재심 청구서

학생생활교육 사안처리 체크리스트(예시)

접수번호 24-00						
단계	체크 사항	체크 항목	√	담당자	일자	
사안 발생	사실 확인	사건 정황·경위 파악	<input type="checkbox"/>	확인자[]	확인일[]	
	학생 지도	1차 면담 및 학생생활교육	<input type="checkbox"/>	지도자[]	지도일[]	
	사안 접수	신고내용 '사안접수대장' 기록	<input type="checkbox"/>	보고자[]	보고일[]	
	사안 보고		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 학교의 장 보고	<input type="checkbox"/>	통지자[]	통지일[]
			관련 교원, 담임교원, 관련자 통지	<input type="checkbox"/>	통지자[]	통지일[]
			관련 학생 및 보호자 통지	<input type="checkbox"/>	기록자[]	기록일[]
사안 조사	관련자 조사	사실 확인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확인자[]	확인일[]	
	입증 자료 수집	물증·증거 수집	<input type="checkbox"/>	확인자[]	확인일[]	
	조사보고서 작성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작성자[]	보고일[]	
	조사 결과 통지		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 학교의 장 보고	<input type="checkbox"/>	보고자[]	보고일[]
			관련 교원,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input type="checkbox"/>	통지자[]	통지일[]
			관련 학생 및 보호자 통지	<input type="checkbox"/>	통지자[]	통지일[]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	위원, 관련자, 학생 및 보호자 참여 가능 일시·장소 선정	<input type="checkbox"/>	통지자[]	통지일[]	
	개최 안내·통지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내부기안	<input type="checkbox"/>	기안자[]	기안일[]
			관련 교원,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input type="checkbox"/>	통지자[]	통지일[]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서면 통지	<input type="checkbox"/>	통지자[]	통지일[]
	징계 심의	징계 조치 심의·의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징계	<input type="checkbox"/> 없음	
	학교의 장 재가	학교의 장 징계 최종 결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재가	<input type="checkbox"/> 불허	
	심의 결과 통지		관련 교원,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input type="checkbox"/>	통지자[]	통지일[]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서면 통지	<input type="checkbox"/>	통지자[]	통지일[]
		불복절차 통지·안내	<input type="checkbox"/>	통지자[]	통지일[]	
징계 이행	이행 계획 통지		학교의 장 보고	<input type="checkbox"/>	보고자[]	보고일[]
			관련 교원,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input type="checkbox"/>	통지자[]	통지일[]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서면 통지	<input type="checkbox"/>	통지자[]	통지일[]
	징계 조치 이행	조치별 징계 이행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행	<input type="checkbox"/> 미이행	
	징계 이행 보고		학교의 장 보고	<input type="checkbox"/>	보고자[]	보고일[]
			관련 교원,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input type="checkbox"/>	통지자[]	통지일[]
	불복	징계 조치 불복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불복	



Ⅲ.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3-1 제·개정의 원칙

3-1-1 학생생활규정

▣ 학생생활규정

- 학생생활규정이란?
 - 학교 규칙(이하 '학칙') 중에서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생생활규정이라고 함
 -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등 보호자, 학교의 장과 교원(교육 3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
- 교육 3주체
 - 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보호자 : 학생에게 친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학생의 부모'(학부모), 친권자가 없는 경우 학생의 후견인, 기타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학교의 장과 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교장(직무대리 임용자 포함)·교감·수석교사 및 교사
- 학교규칙의 구성(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호)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 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 학생생활규정 방침

- 학교규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6호, 10호와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7호에서제9호2)로 구성되며, 이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생생활규정**이라고함
 -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구성원(학생, 보호자,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음**

■ 학생생활규정의 의의

- 학생 : 학습권을 폭넓게 보호하면서, 학교 내·외에서 학생 행동의 범위를 정하는 법규적 성격이자, 학생들이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해가는 학생자치 활동의 원동력
- 보호자: 학생의 보호자로 자녀의 학교생활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도록 하는 기본적인 안내서
- 교직원: 학생에 대한 교육상의 학교생활교육의 기준으로서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교육하는 규범으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는 수단이며, 학생 및 보호자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역할

■ 학생생활규정의 원칙

- 학생을 교육시켜야 할 피교육자나 통제의 대상이 아닌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생활하는 권리 주체로 인식 필요함
-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보호자,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기술되어야 함

2) 7.학생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학칙개정절차



3-2

학생생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3-2-1

학생생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

■ 학생생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위원

- 학생생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학생, 보호자, 교원, 전문가(필요시)'로 구성하되, 인원은 교육 3주체의 대표 참여를 고려하여 최소 5인 이상으로 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7인 이상을 권장함

■ 학생생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역할

구성(예시)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생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 보호자, 교원 대표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7인 이상을 권장함 ▪ 교원은 학생 위원의 수 이하로 구성, 교직원 회의를 거쳐 구성 ▪ 학생은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되 위원회의 40% 이상 되도록 함.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 ▪ 보호자 위원은 보호자(대표) 회의를 거쳐 구성 ▪ 전문가는 교원, 학생, 보호자 위원의 추천으로 위촉하되 아동, 청소년, 사회복지, 인권, 상담, 법률 관련 경력자 등을 폭넓게 외부위원으로 인정 ▪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 설문조사, 문헌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 개정 시안 수립 ▪ 학생, 보호자 및 교원 대상 연수·홍보 ▪ 기타 학칙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 학년말 당해 연도 학칙 운영 성과 등을 평가 분석

3-3 절차 및 방법

3-3-1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근거 및 절차

▣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근거

-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절차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내 또는 별도로 독립해 규정할 수 있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제4항에 의할 때 학생생활규정을 만들 때는 학생, 보호자,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함
- 초·중등교육법」제32조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최종 결재를 통해 확정하도록 규정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제4항에 따라 미리 학생, 보호자,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진행함
- 이 외 절차는 학교별 여건 및 추진상황에 따라 민주적 의사 절차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관련근거

- ▶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① 국립·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전문개정 2012. 3. 21.]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5. 1. 29., 2011. 3. 18., 2012. 4. 20., 2012. 10. 29., 2020. 2. 25., 2022. 8. 30.>
- 9. 학칙개정절차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1. 3. 18., 2012. 4. 20., 2013. 2. 15., 2022. 8. 30.>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2. 3. 22.>
 1.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
 -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7. 12. 29., 2022. 3. 22.>
 1.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3. 18.]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절 차	추진 내용	세부 추진 내용
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생생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 ▶ 학칙 제·개정 제반 사항 추진
	↓	
	제·개정안 발의	▶ 학교 구성원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활용 ▶ 전수 또는 표본조사 실시
	↓	
②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1차 시안 마련	▶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 작성
	↓	
	토론회, 공청회 개최 (학교 실정에 따라 운영)	▶ 초안의 취지와 주요 사항 안내 ▶ 의견 수렴을 통한 개정안 작성
	↓	
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 시안 마련	▶ 토론회,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시안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최종 확정
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	
	학생생활규정 공포 및 정보 공시	▶ 학생생활규정 공포 ▶ 홈페이지 탑재 또는 가정통신문 발송
	↓	
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생생활규정 안내 및 연수 실시	▶ 학교구성원 대상 학칙 안내 및 연수
	↓	
	적용 및 환류	▶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결과 분석

※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춰 재구성 가능

※ 학생생활규정 학생생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년 초에 구성하고,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함

※ 발의안 : 학생생활 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발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

※ 심의안 : 학생생활 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발의안에 대한 자구와 적정성 검토를 마친 상태

※ 제·개정안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으로, 제·개정안은 학교의 장 공포를 통해 확정

■ 세부내용

- 학생생활규정 발의
 - 학교 구성원 누구나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발의 가능
 - 다만 학생자치회, 보호자(학부모)회, 교직원 회의 등 학교 내 기구를 통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참여를 발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가능
-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
 - 학생생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는 제·개정 발의안의 적법성과 타당성, 형식적 요건과 개정 시기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교육 3주체의 의견 수렴을 진행
 - 학생의 경우 학생자치활동(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동아리 활동 등),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학교 우체통,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 수렴
 - 교원의 경우 부서별 회의, 학년별 회의,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
 - 보호자의 경우 보호자(학부모)회, 가정통신문(설문조사,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의견 수렴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 마련
 - 학생생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모은 의견을 반영하고, 학생생활규정의 형식요건에 부합하도록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을 마련
 - 현행 학생생활규정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 내용을 비교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 내용을 신규 조문 대조표의 형식으로 작성
 - 확정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의 장은 심의안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가 없는 한, 학교운영위원회에 그대로 상정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 학생생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수립 경과, 주요 내용 등을 설명
 -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대부분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학생 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제공
- 제·개정안 학교의 장 승인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면 그 결과를 학교의 장에게 즉시 보고
 - 학교의 장은 법령 위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개정안에 대해 승인
- 제·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의 공포와 시행
 -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을 승인하여 공포
 -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
 - 공고 시 반드시 제·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의 시행 시기 명시
- 학생생활규정 이해 교육
 - 제·개정 후에는 교육 3주체에게 학생생활규정 개정사항을 포함한 전체 규정을 다시 공지
 - 학교의 장은 제·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교육 3주체 모두가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모두의 학교 문화 만들기 책임 규약' 서명 운동도 할 수 있음



- 학년 초 교육 3주체에게 학생생활규정 전체를 안내해야 하며, 이때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서약서 작성 및 제출을 강제하지 않도록 유의

• 점검 및 환류

-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제·개정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차기 개정에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준비

• 운영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1.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9. 학칙개정절차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1.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미리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3. 18.]

3-3-2 제·개정시 유의사항

■ 유의사항

- 학생생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년 초에 구성하고 연간계획 수립 후 활동
- 교육 3주체 의견 수렴 과정 필수
- 학생들의 실제적인 참여 방안 마련(토론회, 투표 등)
-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기술
- 강제적 규정이 아닌 학교 자율성을 존중하고 학생 인권을 기본으로 하는 생활규정
- 교육 3주체 모두가 합의된 규칙을 숙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준수하고 실천하는 노력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운영 체크리스트(예시)

절차	체크사항	체크항목		비고
		예	아니오	
학생생활 규정개정심의위 원회 구성	학생생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 교원, 보호자, 전문가(필요시)로 구성되었는가?			
	학생생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원의 수가 5인 이상으로 적절히 구성되었는가?			
	학생 위원은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였는가?			
개정안 발의	개정안 발의 주체가 적절하였는가?			
교육 3주체 의견 수렴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가?			방법:
	보호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가?			방법:
	교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가?			방법:
인권보장 방향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과정 및 세부 내용에서 학생인권을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학생생활 규정개정심의위 원회 검토	학생생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안전을 검토하였는가?			심의 일:
	개의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가 적절하였는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는가?			심의 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졌는가?			
공포 및 안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의 장 승인(학교의 장 결재)을 거쳤는가?			
	학교 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하였는가?			
	제·개정된 주요 내용에 대해 학생, 교원, 보호자에게 안내, 연수를 하였는가?			



3-4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Q&A

Q 01

Q & A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고려해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요?

A 첫째, 철저적 민주주의 원칙 준수(상위법 존중, 학생생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 3주체의 적극적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입니다.

둘째, 교육적 목표에 맞는 개정입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고 조력하는 교육활동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셋째, 자율과 책임 중심의 자치 규칙이어야 합니다. 교원, 학생, 보호자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생활규정을 만들고, 서로 소통하며 공감대를 넓혀야 하며 제·개정 과정에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교육기본법 제12조 교육당사자(학습자의 책무)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인권보장 등)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2조(학교 규칙의 제·개정)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 기능) ① 국립·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보호자, 교원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Q 02

Q & A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참고할 다른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A 단위학교 학생생활규정은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학교 홈페이지 또는 '학교알리미'(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웹사이트에 탑재되어 있으니 제·개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알리미(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https://schoolinfo.go.kr/Main.do>



**Q** 03

Q & A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 발의는 누가 할 수 있나요?

A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 발의는 학생, 교원, 보호자와 같은 학교 구성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발의에 대한 기준은 학교 상황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으로 기준을 정하여 주체별로 공식적인 발의로 인정하고 제·개정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Q 04

Q & A



학생생활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거나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할 때도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할 때는 교육 3주체의 의견 수렴 결과와 무관하게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단순한 표현·자구 변경은 교육 3주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수정·변경 내용에 대하여 학교의 장 결재를 받은 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생·보호자·교원 등에게 안내·홍보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3-5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제시 목적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으로 민주시민 의식 함양 및 인권 존중의 학교 문화 정착
- 제·개정에 참고할 수 있는 예시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생활규정 제·개정 방향 제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약칭: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 2000. 00. 00. (○○학교-00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학교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3주체의 책임과 역할)

-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학교 공동체의 인권문화를 존중하고 실천하며, 학교 및 교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이하 “교육활동”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학생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3조(학생의 권리)

모든 학생은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제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학습에 관한 권리
2.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3.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4.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5.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6. 안전에 대한 권리
7. 휴식을 취할 권리
8. 개성을 실현할 권리
9. 사생활의 자유
10.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11. 정보에 관한 권리
12. 양심·종교의 자유
13. 표현의 자유
14. 자치활동의 권리
15.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참여할 권리
16.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17. 복지에 관한 권리
18.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19.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20. 급식에 대한 권리
21. 건강에 관한 권리
22.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23.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
24. 그 밖의 보편타당한 권리

제4조(학생의 책임)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
2. 수업 등 교육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책임
3.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4.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육적 권한을 존중할 책임
5. 학교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책임
6. 학생간 서로 존중하며 학교폭력을 일으키지 않을 책임
7. 바른말과 글을 쓰고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책임
8. 수업 등 교육활동 중에 전자기기 사용 규칙을 지킬 책임
9. 학교 환경을 소중히 하고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10.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
11. 그 밖의 보편타당한 학생의 책임

제3장 학생의 기본생활

제5조(기본행동)

- ①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② 학생은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③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글, 상징, 혐오 표현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표현하는 복장이나 장식품 등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 학생은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 ⑥ 학생은 교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권우호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수업 태도)

- ① 학생은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 ② 학생은 교원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 ④ 학생은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원에게 허락을 받는다.
- ⑤ 학생은 교원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⑥ 학생은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⑦ 학생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해당 교육활동의 내용에 대한 실시간 송출, 녹화, 녹음 등을 하지 않는다.

제7조(휴식시간과 여가활동)

- ①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장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의 범위내 에서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을 할 수 있다.

○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을 지키는 것

- ② 학생은 휴식시간에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할 수 있다.
- ③ 학생은 휴식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실, 도서실 등의 특별실은 교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지킨다.
- ④ 학생은 교원의 허락 없이 학교 밖에 나가지 않는다.
-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8조(시설 이용과 환경)

- ① 학생은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 ② 학생은 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 ③ 학생은 수도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절약한다.
- ④ 학생은 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제9조(개인 소유물)**

- 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훼손하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과 그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10조(소지·사용 금지 물품)

학생은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한 각호의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가. 소지 금지 물품

- 1) 성냥,ライター,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 5) 인권침해, 혐오표현, 폭력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 6)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각종 자료나 물품
 -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 8)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
- 나. 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물품
- 1)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이하 “전자기기”라 한다)
 - 2) 과도한 소음 등을 발생시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 및 장치 등

제11조(소지 물품 조사)

- ① 제10조에 따른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학생이 소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원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전 학년·특정 학년·특정 집단 등) 대상으로 정기적·일괄적으로 검사해서는 안 된다.
- ② 교원이 소지 물품을 조사할 때는 학생에게 소지 물품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④ 교원은 소지 물품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예: 공개된 장소에서의 검사, 학생 가방을 뒤집어 흔들어 쏟아내는 행위 등)

제12조(학생 개인물품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청소년이 소지하기에 부적절한 물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 ② 교원은 사안이 처리된 후에는 보호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③ 학생이 수업 등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사용한 경우는 해당 수업 또는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원이 보관할 수 있다.
- ④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 ①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목적 및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교원이 허가한 경우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수업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활동을 방해한 경우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 ③ 휴대전화는 개인 통신용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도 포함한다.

제14조(정보통신 윤리)

- ①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정보와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학생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학생은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유해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5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5조에 따른 학업 및 진로·제6조에 따른 보건 및 안전·제7조에 따른 인성 및 대인관계·제8조에 따른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16조(생활지도의 방식)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9조에 따른 조언·제10조에 따른 상담·제11조에 따른 주의·제12조에 따른 훈육·제13조에 따른 훈계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의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② 고시 제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와 정규 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조치에 관한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행동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 제20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7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 대상 학생 선발 등 학생 포상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및 이 규정 제20조에 따른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학부모 및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학생 징계)

-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0일 0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0일 0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5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한다.
 5. 퇴학처분 (고등학교만 규정에 넣고, 초·중학교는 삭제)
-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징계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징계 행위를 한 학생과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징계 학생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노약자 등 여부 및 그 정도
 5.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 ③ 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해야 한다.
 4. 제19조에 따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은 그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0일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재심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학생 또는 보호자가 조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학교의 장이 재심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학교장이 조치 이행 중 학생의 반성 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등을 고려하여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⑤ 제20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고등학교만 해당되며, 초·중학교는 해당 없음.)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된 사람인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장 학생생활규정 개정

제22조(학생생활규정의 개정)

-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 자치법규,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및 지침에 따라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표는 교장에게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교직원협의회의 의결
 2. 학부모회의 의결
 3. 학생자치회의 의결
 4. 제23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의결
- ③ 교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정의 개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3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④ 교장은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자치회의 회의
 2. 학부모회, 학부모회 분과 모임 등의 회의
 3. 교직원협의회, 교사협의회 등의 회의
 4. 그 밖에 학교누리집,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제23조(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 ①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2. 학생생활규정안의 검토,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의 절차와 방법
 3. 학생생활규정안의 제정·개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4. 학생생활규정안의 확정
 5.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학생생활규정 연수·홍보
 6. 학생생활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
 7. 학생 구성원의 학생생활규정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8.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대표로 구성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대표 위원이 전체의 40% 이상이 되도록 한다.

○ 학교의 규모의 따라 학생위원 참여 인원 수를 정할 수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제19조에 따라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 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⑩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0000. 00. 00.>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6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약칭: 학생생활규정)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8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6. 28.] [대통령령 제33566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5. 1. 29., 2011. 3. 18., 2012. 4. 20., 2012. 10. 29., 2020. 2. 25., 2022. 8. 30.>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5. 1. 29.>

③ 다음 각 호의 학교·학과·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1. 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3. 법 제48조에 따른 학과
4. 법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
5. 기숙사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1. 3. 18., 2012. 4. 20., 2013. 2. 15., 2022. 8. 30.>

[제목개정 2011. 3. 18.]

1. 교육활동의 정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안전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3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2. 1. 26., 2015. 1. 20., 2021. 3. 23.>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
 -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2.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5.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학생의 책임·의무

세계인권선언

- 제29조** 1.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 어떤 사람이든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온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권리와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즉, 타인에게도 나와 똑같은 권리와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민주사회의 도덕률과 공중질서, 사회전체의 복리를 위해 정당하게 요구되는 사안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3. 그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

교육기본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2장 교육당사자 <개정 2007. 12. 21.>

제12조(학습자)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2. 27.>

[본조신설 2007. 12. 14.]

[제목개정 2022. 12. 2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9. 1.]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2023. 9. 1., 제정.]

-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23. 4. 2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256호, 2023. 4. 28., 타법개정]

- 제4조(책임과 의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 스스로가 인권을 학습하고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④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학생의 권리

교육기본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개정 2021. 9. 24.>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 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24. 2. 16.]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458호, 2024. 2. 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국제연합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 또는 유치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과 퇴학 여부를 다루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과 같은 조 제2항의 직원, 「유아교육법」 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과 그 밖의 사람으로서 유아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학생의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 제4조(교육감 등의 책임과 의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 스스로가 인권을 학습하고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삭제 <2024.2.16.>
 ④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2.16.]

- 제4조의2(학생의 책임과 의무)** ①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습자로서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관계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24.2.16.]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교육에 관한 권리

-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근거한 특성화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4.2.16.>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 종례 이후 실시되는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2.16.>
 ③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 등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제목개정 2024.2.16.]

- 제7조(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절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에게 칭찬, 상 등의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24.2.16.>

제3절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 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에 대한 권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일 경우 행위자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신설 2024.2.16.>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 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2.16.>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복을 입는 학교의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을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 ③ 교직원은 학생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과 건강 등에 위해를 끼치는 물품 또는 학교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학교 규정에 따라 분리·보관할 수 있다.<신설 2024.2.16.>
- ④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2.16.>
- ⑤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은 수업 중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그 밖의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 사용과 소지에 관한 사항은 학교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4.2.16.>
- ⑥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의 부착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교육비, 급식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4.2.16.>

-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 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또는 삭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업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조 제19조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⑤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 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 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 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 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 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 ④ 학생자치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 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 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이하 ‘학교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 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와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 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 부진,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 과 적성 발견, 진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다문화가정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상담과 그에 따른 구체적 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체도를 수립·정비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와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공간의 성 인지적 설계를 통해 성 평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4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유·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는 등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인권침해구제를 위한 권리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2.16.>

제27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인권담당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4.2.16.>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④ 인권담당관 및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청구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28조(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1.10.]

제29조(홍보) 교육감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한 교육용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조(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학생 노동활동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 학습 및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 <2023.4.28.>

- 제32조(보호자의 권리와 교육)** ① 보호자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교육과 관련하여 교직원에게 대하여 상담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하며,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3조 삭제 <2023.4.28.>

제34조 삭제 <2023.4.28.>

제35조 삭제 <2023.4.28.>

- 제36조(학교별 평가와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정기적으로 학교별 학생인권 실현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호

- 제3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교부적응 학생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과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아니 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절 학원 및 대안학교 등에서의 인권보장

- 제39조(학원, 대안학교, 평생교육 등)**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으나 학생과 같은 연령대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습을 위한 시설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학원의 설립 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과 대안학교, 평생학습센터 등 대안 교육 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들 교육기관에서의 인권 보장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5절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

제40조 삭제 <2023.4.28.>

제41조 삭제 <2024.2.16.>

제42조 삭제 <2023.4.28.>

제43조 삭제 <2023.4.28.>

제44조 삭제 <2023.4.28.>

제45조 삭제 <2023.4.28.>

제46조 삭제 <2023.4.28.>

제47조(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이 조례에 합치하도록 학생생활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직원, 보호자, 학생대표로 구성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

제48조 삭제 <2023.4.28.>

제49조 삭제 <2023.4.28.>

제50조 삭제 <2023.4.28.>

제5장 보칙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458호,2024.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교육활동의 녹화·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3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제32조·제35조·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 등 우편금지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우편물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 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3조·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 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29.>

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 29.>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9.>

5.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50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 라.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 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 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 게재· 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가. 청소년유해약물

-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나. 청소년유해물건

-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 2)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 3)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6. “유통”이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방송·공연·상영·전시·진열·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학생생활지도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6. 28.] [대통령령 제33566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9. 1.]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2023. 9. 1.,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 보호자의 책임

교육기본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약칭: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3. 27.>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9. 1.]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2023. 9. 1., 제정.]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8. 재심청구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8조의3(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14.]



9. 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496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8조의3(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0. 9. 25] [대통령령 제31021호, 2020. 9. 22, 일부개정]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8.>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 3. 18.>

④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8.>

⑤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8.>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8.>

⑦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8.>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 된다. <개정 2011. 3. 18.>

3-7 **관련서식**

서식은 예시이며 학교 여건에 따라 변경 또는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식1 **개인 휴대전화 사용허가 요청서 서식(예시)**

개인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허가 요청서

학생 성명	
학년 / 반	
신청 물품	
사용 신청 일시	년 월 일 시
사용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 목적	※ 학생의 휴대전화(이하 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한다) 종류, 구체적인 사용 행위와 목적 등 구체적으로 기술
증빙 자료	

-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받지 않음.
- ◆ 휴대전화 보관 및 사용에 따른 책임은 물품 소유자 개인에게 있음.
- ◆ 기존 목적에 맞지 않는 휴대전화 사용 또는 불법적 사용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년 월 일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 성명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하



서식2 ○○○실(일시 분리장소) 분리 지도 대장(예시)

○○○실 분리 지도 대장

<○○○학교>

일자	2023. 11. 1.(수)		확인(서명)	분리 지도 학생	분리 지도 교사	학교장 확인
내용	교시	수업교사	분리사유	학번 이름 누적일	직위 성명	학교장 확인
	1	장○○	2회 전자기기 무단사용 깨워도 계속 누워있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음	10101 안○○ (5/1, 7/5)	교사 홍길동	서명
특이 사항	1. 10101 장○○. 주어진 과제 미수행으로 시간 연장됨을 2교시 교과수업담당 교사에게 알림. 2. 10101 장○○. 무선이어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등 특별실(성찰실) 규칙 위반으로 물품을 분리보관하여 담임교사에게 인계함.					

서식3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예시)

보호자님께!

○○○학교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학습 실시에 따른 보호자 협조사항

- (가정학습보호자확인서 제출)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예시) : ‘보호자 확인서’를 학교담당자에게 사진으로 전송, 메일, 출력물 지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
- (가정학습 시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학교 담당자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000-000-00009(학교대표 번호 이용)

2023년 00월 00일

○○○학교장 (직인)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아래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년 반 이름

가정학습 일시	가정학습 내용
년 월 일	○○○ 온라인 학습 참여, 교과서 내용 정리 등
특이사항	

보호자 성명		(서명)
보호자 연락처1		학생과의 관계()
보호자 연락처2		학생과의 관계()



서식4 교실 밖 일시적 분리 조치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예시)

※ 교실 밖 일시 분리 조치 지도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게시물

교실, 학교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분리실 등에 게시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성찰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성찰실에 있는 동안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1일 ()회 이상 누적될 경우 보호자 인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아래 규칙을 성실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합니다.
2.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야 합니다.
3.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4.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물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6.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7.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엎드려 있을 수 없습니다.
8. 정해진 성찰 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9.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0.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

서식5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예시)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해당 요건	요건		해당 사항에 체크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예시) 흉기, 라이터, 화학약품 등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예시) 술, 담배, 마약 등	
	4	기타 학생생활규정으로 금지한 물품(예시) 도색잡지 등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물품 분리보관 확인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경위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은 경위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분리보관 물품 중 타인과 자신의 안전에 해가 되거나 학생에게 금지된 물건 등은 보호자가 직접 물품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해당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분리보관()일 종료 후 ()일이 지난 후에는 물품을 잔동으로 폐기하며, 해당 기간 이후 학교는 물품폐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분리보관 기간을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

○○○학교장



서식6 물품 폐기 확인서(예시)

물품 폐기 확인서

학생 성명	
학생 학년 / 반	
물품 발견 일시	년 월 일 시
즉각 폐기 물품	
즉각 폐기 경위	※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의 종류 및 구체적인 사용 행위, 폐기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위와 같은 경위로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 후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서식7 성찰하는 글쓰기 서식(예시)

성찰하는 글쓰기			
일자	년	월	일 시
학번		학생 성명	
※다음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작성해 보세요.			
1.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 상황(친구와의 갈등, 교칙위반 등)은 무엇인가요?			
2.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친구, 부모님, 선생님)은 어떠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3. 앞으로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자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4. 주변 사람들이(친구, 부모님,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나요?			
			년 월 일
		확인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2024 학생생활교육 길라잡이

■ 총괄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 기획

원동식(학생생활교육담당 장학관)

■ 연구 및 검토

한상균(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한세원(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이정현(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조성욱(김제여자고등학교 교사)

박지웅(송광초등학교 교사)

배대성(전주제일고등학교 교사)

박경문(해성중학교 교사)

손재성(전북대사범대부설고등학교 교사)

김한중(전북대사범대부설고등학교 교사)